

(4) 적절한 보수체계의 확립

'최저기준규칙' 제76조 ① 수형자의 작업에 대한 공정한 보수체도가 있어야 한다.

② 이 제도하에서 수형자는 적어도 수입의 일부를 자신의 용도를 위하여 허가된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일부를 가족에게 보내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③ 이 제도는 아울러 시설이 수입의 일부를 떼어 저축기금을 마련하여 석방 때 수형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유럽규칙' 제76조 ① 피구금자의 작업에 상응하는 보수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②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구금자는 최소한 자기 보수의 일부를 자신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인정된 물품의 구입에 소비할 수 있고, 나머지 보수에 대해서는 가족이나 인정된 목적을 위해 소비할 수 있도록 허락되어야 한다.

③ 석방시에 피구금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저축자금을 구축하기 위해 당국은 보수의 일부를 저축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다."

education and other activities required as part of their treatment and training for social resettlement.

7) 76. ① There shall be a system of equitable remuneration of the work of prisoners.

② Under the system prisoners shall be allowed to spend at least a part of their earnings on approved articles for their own use and to send a part of their earnings to their family.

③ The system should also provide that a part of the earnings should be set aside by the administration so as to constitute a savings fund to be handed over to the prisoner on his release.

2) 국내 행정법규

(1) 행정법 관련 규정

행정법은 제8장에서 교도작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교도작업의 목적과 시행과 관련해서는 행정법 제35조 제1항에 수형자의 연령, 형기간, 건강, 기술, 성격, 취미, 직업과 장래의 생계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수형자에게 작업을 과하고, 제2항에 수형자의 사회 복귀와 기술 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기업체 등에 통근작업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금고와 구류형을 받은 자에게는 신청에 의하여만 작업을 과할 수 있다(행정법 제38조). 신청에 의하여 취업한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작업을 중지하거나 작업의 종류를 변경하지 못한다(시행령 제120조). 한편 20세 미만의 소년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할 때는 특히 교양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15조).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종류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정한다(시행령 제116조 제1항). 소장은 수형자에게 장래의 생계 및 기술 습득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제2항),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형자를 도급작업에 취업시킬 수 있다(시행령 제121조).

또한 소장은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종류 및 1일의 작업과정을 정하여 해당 수형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17조). 수형

8) 76. ① There shall be a system of equitable remuneration of the work of prisoners.

② Under the system prisoners shall be allowed to spend at least a part of their earnings on approved articles for their own use and to allocate a part of their earnings to their family or for other approved purposes.

③ The system may also provide that a part of the earnings be set aside by the administration so as to constitute a savings fund to be handed over to the prisoner on release.

자의 작업과정은 당해 수행자의 작업성과 작업상여금의 계산비율 및 작업시간을 참작하여 부과한다. 그러나 작업과정을 결정하기 어려운 작업은 당일의 작업시간을 작업과정으로 본다(시행령 제118조). 소장은 20세 미만의 수행자·노쇠자·병약자 및 신체장애자에 대한 작업과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시행령 제119조).

국가경축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12월 31일 등 휴일에는 작업을 과하지 아니한다. 단, 취사, 청소, 간호, 경리 기타 특히 필요한 작업은 예외로 한다(행형법 제36조 제1항, 시행령 제123조). 수행자 중 부모, 처자 또는 형제의 부고를 받은 자는 2일간, 부·모 또는 처의 기일은 1일간 작업을 면한다(행형법 제37조). 소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매일 1회 수행자의 작업성적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22조).

작업상여금과 관련해서는 행형법 제39조 제1항에 작업수입을 국고 수입으로 한다고 했지만, 제2항에서 “수행자에게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업의 종류, 성과와 행장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작업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작업상여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한다. 단, 본인의 가족생활 부조 또는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방 전이라도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제3항).

또한 행형법 제40조에는 수행자가 취업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불구자가 된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조위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조위금은 그 상속인에게 각각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소장은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그 상속인 등을 대조·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24, 125조).

(2) 교도작업 관용법 및 교도작업 특별회계법

교도작업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건 및 자재를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이나 국영기업체 또는 정부관리 기업체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게 하여 교도작업의 능률을 향상함으로써 교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962년 교도작업 관용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교도작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도작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61년 교도작업 특별회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해 교도작업에서 나오는 일체의 수입과 전입금, 차입금을 그 세입으로 하고, 교도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세출로 하여 특별회계로 처리된다.

(3) 운영 실태

교정작업은 수요자의 형편과 주문 및 작업시행 방법에 따라 직영작업, 위탁작업, 노무작업, 도급작업으로 분류하여 시행되고 있다. 직영작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목공, 인쇄공, 봉제공, 축산공, 직조공 등 30개 직업의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1997년의 경우 교도작업 예산 규모는 345억 원이고, 1일 평균 2만 2,149명의 수행자가 취업하였다고 한다.

작업상여금은 수행자가 출소 후 생계기반 조성을 위하여 국가가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일반작업상여금과 특별작업상여금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일반작업상여금은 모든 취업자에게 작업 기능에 따른 등급과 행형 성적을 참작하고 작업시간에 따라 매일 일액을 계산한 후 매월 지급하고 은행에 예탁관리한다.

일반작업상여금 지급 기준은 작업 내용을 기술작업·중노동(1류), 단순작업·경노동(2류), 관용작업·직업훈련(3류) 3류로 구분하고, 각류를 다시 상·중·하로 구분하여 9등급으로 하였다. 행장등급을 1·

2급과 3·4급으로 구분하여, 최저 1일 500원(3·4급 3류 하)부터 최고 1일 4,000원(1·2급 1류 상)까지 지급한다.

한편 특별작업상여금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형집행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8년 이상 취업한 자 중에서 작업 및 행형 성적이 우수한 장기수형자가 가석방으로 출소할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인의 일반작업상여금에 100%를 가산하여 최고 5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작업 중 사고로 장애를 입게 된 경우에 지급되는 위로금과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조위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재해보상과 동일하게 지급되는데, 위로금은 최고 1,252만 8천 원까지, 조위금은 최고 1,326만 원까지 지급된다.

한편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자가 작업을 신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감호작업을 시키고 있다. 이 경우에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시행하고 근로보상금은 7등급으로 구분하여 최저 7등급 1일 1,100원부터 최고 1등급 1일 4,800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3) 설문조사 분석

(1) 작업의 실시 및 작업 내용

설문 대상자들의 입소 전 직업은 학생 92명(40.0%), 노동자 29명(12.6%), 자영업과 회사원이 각각 19명(각각 8.3%), 사회운동 8명(3.5%), 무직 12명(5.2%), 기타 23명(10.0%)이었다(28명(12.2%) 무응답).

작업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62명(27.0%)은 했다, 103명(44.8%)은 안했다고 답변했고, 65명(28.3%)은 응답하지 않았다.

실시한 작업 내용에 대해서는 목공 6명, 종이봉투 제작, 양재, 조화 각 5명, 축구공 꿰매기, 인쇄 각 3명, 수작업, 외부통근, 영선, 철공, 미

싱, 이용, 혁공 각 2명, 기타 등등이었다.

작업분류시 자신의 의사가 반영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4명(1.7%)은 모두 반영, 17명(7.4%)은 절반 반영, 53명(23.0%)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156명(67.8%)은 답변하지 않았다.

(2) 작업 과정

평균 작업시간에 대해서는 평일의 경우 8시간 35명, 7시간 9명, 6시간 8명, 8~10시간 4명, 6~8시간 2명, 5시간 2명으로 나타났고, 토요일의 경우 4시간 32명, 3~5시간 8명, 3시간 6명, 1~2시간 4명으로 나타났다.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4명은 만족스럽다, 67명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7명은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작업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안전시설 등의 조치가 충분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19명은 충분하다, 55명은 충분하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산재발생시 교도소 당국의 조치에 대하여는 사고발생의 축소·왜곡 및 책임 회피 8명, 본 기억이 없다 5명,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4명, 은폐 2명 등으로 나타났다.

(3) 작업상여금

작업상여금에 대해서는 2명(0.9%)이 적합하다, 18명(7.8%)이 박하다, 58명(25.2%)이 터무니없이 박하다, 8명(3.5%)이 모르겠다고 답변했고, 144명(62.6%)은 응답하지 않았다.

행장급수는 1급 16명(7.0%), 2급 15명(6.5%), 3급 22명(9.6%), 4급 11명(4.8%), 무급 138명(60.0%), 무응답 28명(12.2%)으로 나타났다.

출소할 때 지급받은 일반작업상여금 액수는 적은 사람은 0원부터 제일 많은 사람은 60만원 정도로서 사회정착금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4) 작업교육의 효과

작업교육이 능력 있는 사람에 의해 충분히 실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18명(7.8%)이 그렇다, 57명(24.8%)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으며, 무응답이 155명(67.4%)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이 재범 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대답은 33명이었고, 64명은 효과가 없다고 보았다. 수용시설에서 배운 기술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그렇다가 11명(4.8%), 그렇지 않다가 50명(21.7%), 전혀 그렇지 않다가 41명(17.8%)이었고, 무응답은 128명(55.7%)으로 나타났다.

재소자들이 받고 싶은 교육에 대하여는 컴퓨터 11명, 운전 7명, 검정고시, 미용, 목공, 봉제 각 5명, 정비 4명, 외국어 3명 등으로 나타났다.

(5) 기타

작업과 관련한 기타 의견으로 열악한 작업 환경, 너무 적은 작업상여금,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는 작업의 필요성 등을 지적하였다.

4) 종합평가 및 개선책

(1) 법 규정상의 문제점

국제기준은 수형자의 1일 또는 주당 최고 작업시간을 일반사회의 근로자의 기준에 맞게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행형법 규에서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 행형법 등에 명문으로 최고 작업시간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수형자의 작업과정에서의 안전보건과 재해방지 등에 관해 국제기

준에서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보호조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행형법에는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수형자의 작업과정에도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당연히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운영상의 문제점

교정시설 내의 작업은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다양하게 실시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작업분류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작업교육이 능력 있는 사람에 의하여 실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작업 내용도 사회에 복귀하여 활용되기 어려운 것이 많아 재범 방지에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소자들이 원하는 교육이 충분히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재소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실효성 있는 작업과 훈련 및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작업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안전교육이나 시설이 미비한 형편이며, 산재의 경우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도 필요하다.

작업상여금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재소자가 터무니없이 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바, 이를 어느 정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재소자는 작업상여금으로 필수품을 구입하기도 하고, 가족에게 송금하기도 하며, 출소할 때에는 정착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액수가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어 많은 불만의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의 적절한 수준으로의 조정이 필요하다.

제5장
면회, 편지 및 금품의 취급

도 재 형

1) 국제적 기준

외부와의 교통은 수형자와 미결수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국제원칙을 살펴보다라도 미결수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미결수의 경우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위해 최대한의 외부교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이번 설문조사는 수용자 중 기결수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내용 역시 기결수의 일반인 면회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국제원칙 역시 그 부분에 한정하여 소개하도록 하겠다.

1) 예컨대, 세계인권선언 제11조의 자기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보장을 받으면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사회권조약(ICCPR) 제14조 3항b의 방어를 위한 충분한 시간과 편의를 받고 변호인과 연락할 권리, 최저기준규칙 제93조의 자기의 변호를 목적으로 하는 변호인의 방문을 받을 권리 및 그 세부적 권리, 보호원칙 18조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이것은 수형자도 포함되나 특히 미결수에게 더 의미가 있는 원칙임), 그리고 변호사의 방문·통신·접견을 보장한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기본원칙 8조 등이 특별히 미결수의 교통권과 관련이 있다.

(1) 외부인과의 접견 기회의 보장

'최저기준규칙' 37조 피구금자는 필요한 감독하에 일정 기간마다 가족 또는 신뢰할 만한 친구와의 통신 및 접견이 허용되어야 한다.

38조 ① 외국인 피구금자에게는 소속 국가의 외교대표 또는 영사와 교통하기 위한 상당한 편의가 허용되어야 한다.

② 외국대표나 영사가 없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피구금자와 망명자 또는 무국적자에게는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가의 외교대표 또는 이러한 자의 보호를 임무로 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관과 교통할 수 있는 전항과 동일한 편의가 허용되어야 한다."

'보호원칙' 제15조 제16조 4항, 제18조 3항에 규정된 예외의 경우라도 억류 또는 구금된 자와 외부(특히 가족과 변호사)와의 교통은 수일간 이상 거부되어서는 안된다.

제19조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특히 가족의 방문을 받고 가족과 통신할 권리를 가지며, 외부사회와 교통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단, 법률 또는 법률에 따른 규칙에 의하여 정해진 합리적인 조건과 제한에 따른다.

2) 37. Prisoner shall be allowed under necessary supervision to communicate with their family and reputable friends at regular intervals, both by correspondence and by receiving visits.

38. ① Prisoners who are foreign nationals shall be allowed reasonable facilities to communicate with the diplomatic and consular representatives of the State to which they belong.

② Prisoners who are nationals of State without diplomatic or consular representation in the country and refugees or stateless persons shall be allowed similar facilities to communicate with the diplomatic representative of the State which takes charge of their interests or any national or international authority whose task it is to protect such persons.

제20조 억류 또는 구금된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통상 주거에 상당한 정도로 인접한 억류 또는 구금시설에 유치되도록 해야 한다.”

‘유럽규칙’ 43조 ① 피구금자는 그 처우, 보안 및 시설의 적정한 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한과 감시하에서 가능한 한 자주 모든 개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와 통신하고 그들로부터 방문을 받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② 외부와의 접촉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 규칙 제4장에 규정하는 처우 목적과 양립하는 출감제도가 있어야 한다.

제44조 ① 외국 국적의 피구금자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그가 속하는 국가의 외교대표 또는 영사와 접촉할 수 있음이 고지되고, 교통을 위하여 그에 상응하는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시설 관리자는 특별한 필요성을 갖는 외국 국적의 피구금자를 위하여 위 외교대표 등과 충분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외교대표 또는 영사가 없는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피구금자 및 난민, 무국적자에 대해서는 이들의 이익에 책임이 있는 국가의 외교대표 및 이들의 보호를 임무로 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관과 통신하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은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3) 15. Notwithstanding the exceptions contained in principles 16, paragraph ④, and principle 18, paragraph ③, communication of the detained or imprisoned person with the outside world, and in particular his family or counsel, shall not be denied for more than a matter of days.

19. A detained or imprisoned person shall have the right to be visited by and to correspond with, in particular, members of his family and shall be given adequate opportunity to communicate with the outside world, subject to reasonable condition and restriction as specified by law or lawful regulation.

20. If a detained or imprisoned person so request, he shall if possible be kept in a place of detention or imprisonment reasonably near his usual place of residence.

(2) 외부와의 편지 교환 및 방송의 청취 등

‘최저기준규칙’ 제39조 피구금자는 신문, 정기간행물 또는 시설의 특별 간행물을 열독하고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며 강연을 듣거나 당국이 허가하거나 감독하는 유사한 수단에 의하여 보다 중요한 뉴스를 정기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

‘유럽규칙’ 제45조 피구금자는 일간지, 정기간행물 혹은 기타의 출판물, 특별간행물을 읽고, 라디오 방송 혹은 텔레비전 방영을 시청하며, 강연을 듣고 또는 당국이 허가하거나 검열하는 기타 유사한 수단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뉴스를 알 수 있도록 허락되어야 한다. 구금된 국가의 언어를 이해하기 어려운 외국인 피구금자의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 특별조치가 강

4) 43. ① Prisoners shall be allowed to communicate with their families and, subject to the needs of treatment, security and good order, persons or representatives of outside organization and to receive visits from these persons as often as possible.

② To encourage contact with the outside world there shall be a system of prison leave consistent with objectives in Part IV of these rules.

44. ① Prisoners who are foreign nationals should be informed, without delay, of their right to request contact and be allowed reasonable facilities to communicate with diplomatic or consular representative of the state to which they belong. The prison administration should co-operate fully with such representatives in the interests of foreign nationals in prison who may have special needs.

② Prisoners who are nationals of states without diplomatic or consular representation in the country and refugees or stateless persons shall be allowed similar facilities to communicate with the diplomatic representative of the state which takes charge of their interests or national or international authority whose task it is to serve the interests of such persons.

5) 39. Prisoners shall be kept informed regularly of the more important items of news by the reading of newspaper, periodicals or special institutional publications, by hearing wireless transmission, by lectures or by any similar means as authorized or controlled by the administration.

구되어야 한다.⁶⁾

(3) 금품의 취급

'최저기준규칙' 43조 ② 모든 보관 금품은 피구금자가 석방될 때 그에 반환되어야 한다. 다만 석방 전에 피구금자가 금전을 사용하거나 보관 물품을 시설 밖으로 송부하는 것이 허가된 경우 또는 위생상의 이유로 의류를 폐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구금자는 반환 받은 금품에 관하여 영수증에 서명하여야 한다.

③ 피구금자가 외부로부터 받은 금전 또는 물품에 관하여도 전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취급하여야 한다.⁷⁾

유럽규칙 48조 ② 이들 보관 금품은 피구금자의 석방시에 본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단, 석방 전에 적법하게 공제된 금전, 시설 바깥으로 송부하는 것이 허락된 물품 혹은 위생상의 이유로 폐기되지 않으면 안되었던 물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구금자는 반환받은 금품에 대하여 수령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45. Prisoners shall be allowed to keep themselves informed regularly of the news by reading newspapers, periodical and other publications, by radio or television transmissions, by lectures or by any similar means as authorized or controlled by the administration. Special arrangement should be made to meet the needs of foreign nationals with linguistic difficulties.

7) 43. ② On the release of the prisoner all such articles and money shall be returned to him except in so far as he has been authorized to spend money or send property out of the institution, or it has been found necessary on hygienic ground to destroy any article of clothing. The prisoner shall sign a receipt for the article and money returned to him.

③ Any money or effects received for a prisoner from outside shall be treated in the same way.

③ 피구금자를 위하여 외부로부터 차입된 금전 또는 물품도 실행 가능한 한 위 2항과 같은 규칙에 따라야 한다. 단 구금 중에 사용하기 위해 차입되고, 사용이 허가되었던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⁸⁾

2) 국내 행정법규

우리나라 행정법령에서는 변호사와의 면회와 일반인과의 면회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의 접견권은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그리고 기결수와 미결수 여부에 따라 그 취급이 구분된다. 하지만 이번 설문조사는 기결수로 한정되어 이루어졌으므로 법령도 기결수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1) 외부인과의 접견 기회 보장

행정법 제18조 제1, 2항은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과 접견……할 수 있"으며 이때 소장은 수용자의 접견이 교화상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형자의 접견 횟수는 원칙적으로 징역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매월 2회, 구금·노역장 유치 또는 구류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매월 3회로 제한되어 있다(시행령 제56조).

수용자의 접견시간은 30분 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접견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내에 행해져야 한다(시행령 제54, 55조).

8) 48. ② On the release of the prisoner, all such articles and money shall be returned except insofar as there have been authorized withdrawals of money or the authorized sending of any such property out of the institution, or it has been found necessary on hygienic grounds to destroy any article and money returned.

③ As far as practicable, any money or effects received for a prisoner from outside shall be treated in the same way unless they are intended for and permitted for use during imprisonment.

접견장소는 접견실에서 해야 하고, 다만 소장이 허가하는 경우 접견실 이외의 장소에서도 가능하다(시행령 제59조). 그리고 접견시 원칙적으로 외국어를 사용하지 못한다(시행령 제60조).

수용자의 접견은 교도관의 참여하에 이루어지며(행형법 제18조 제3항), 소장은 수용자와의 접견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성명, 직업, 주소, 연령 및 수용자와의 관계를 기록하여야 하고 접견시 면담요지를 기록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8조 제1항).

(2) 외부와의 편지 교환 및 방송의 청취

행형법 제18조 제1항은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과…… 서신을 수발할 수 있”으며, 수용자의 서신 수발은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장이 교부를 불허한 서신은 이를 폐기하며, 다만 폐기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석방할 때 본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행형법 제18조 제5항).

수용자가 발송하는 서신은 횟수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다만 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징역의 수용자에 대해서는 매월 2회, 금고·노역장 유치 또는 구류의 수용자에 대해서는 매월 3회로 제한할 수 있다(시행령 제62조).

소장은 수용자가 수발하는 서신을 검열하며, 수용자가 발송하는 서신은 봉합을 하지 아니하고 교도소측에 제출되어야 하고, 수용자가 수령할 서신은 교도소측이 개봉한 후 검열하게 된다(시행령 제62조). 행형법은 서신의 검열과 발송 및 교부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행형법 제18조 제4항).

수용자가 발송하는 서신은 원칙적으로 일요일, 휴일 또는 토요일에 작성할 수 있으며, 집필은 집필실·거실 또는 공장 안의 지정된 장소에서 할 수 있다(시행령 제65, 66조). 만약 수용자가 서신을 스스로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그의 요구에 의하여 교도관이 대서할 수 있으며, 서신의 용지 및 우표요금을 자비로 부담할 수 없는 경우 교도소측이 관급할 수 있다(시행령 제68, 69조).

(3) 금품의 취급

수용자에게 금품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소장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행형법 제42조 제1항). 이때 수용자에 대한 금품의 교부는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 문구, 인지, 우표, 우편엽서 또는 수용중이나 석방시에 필요한 한도 내의 금전과 물건에 한하여 할 수 있다(시행령 제130조). 교부가 허가된 금품은 교도소 등에 영치한 후 사용할 수 있다(시행령 제131조 제1항). 수용자에게 교부된 서신 기타 문서 역시 본인이 열람한 후 이를 영치한다(행형법 제19조).

만약 본인이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또는 그 물품을 본인에게 교부함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도소측이 그 금품을 송부한 외부인에게 환부하게 된다(행형법 제42조 제2항). 영치한 금품은 수용자가 석방할 때 본인에게 환부한다(행형법 제43조 제1항).

3) 설문조사 분석

(1) 외부인과의 접견 기회 보장

실제 면회시간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일반적인 경우 약 5분에서 10분 정도의 면회시간이 허용되었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1분 정도밖에 면회를 할 수 없었다는 답변도 나왔다. 그리고 응답자 중 164명(71.3%)은 면회시간이 부족하거나 매우 부족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그 이유로서 ‘시설과 인력의 부족’, ‘인권 의식의 부족’을 들었다. 그리고 면회 대상을 제한하였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119명(51.7%)이 면회객의 제한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면회시설과 관련해서는 137명(59.6%)이 그 숫자가 매우 부족하다고 답변하였고, 거의 같은 수가 면회할 때 면회객의 말이 잘 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면회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96명(41.8%)이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121명(52.6%)이 부자유스러운 분위기였다고 대답하였다. 면회시 입회 교도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124명(53.9%)이 제지를 당한 적이 있으며, 제지방법은 주의를 주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면회실 밖으로 끌려 나갔다는 대답도 10명이 있었다.

면회실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특별면회는 응답자 중 105명(45.7%)이 그럴 기회가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특별면회를 한 경우에 그 허가 사유로는 면회객의 신분(교수, 가족, 교화위원, 변호사 등)에 기인한 것이 두드러졌다.

기타 의견으로서 면회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면회를 오는 가족들에 대해서 교도소측이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유력인사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것 등에 대해서는 방지 내지 개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2) 외부와의 편지 교환 및 방송의 청취

서신의 작성 시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105명(45.7%)이 일과시간 이외의 경우 자유롭게 서신을 작성할 수 있었다고 대답하였고, 서신 발송 대상자에 대해 제한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135명(58.7%)이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고 대답하였으나 가족과 친족에 한정되었다는 답변도 38명(16.5%)에 달했다. 120명(52.1%)이 교도소측에 의해 서신 발송을 불허당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그 중 53명은 불허 사실 자체를 교도소측이 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불허된 서신은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거나 소내 가혹행위 또는 생활을 기재한

내용이 들어 있는 편지나 민가협 또는 기타 사회단체에 보내는 것 등이었다.

외부인이 수용자에게 보낸 서신의 교부가 불허된 적이 있는 경우도 95명(41.2%)에 이르렀다. 불허된 편지로는 정치적 내용, 박노해의 시가 게재된 것과 민가협 소식지, 반체제 인사의 편지 등이 있었다. 그리고 불허 사실에 대해서 교도소측이 통지를 해 주지 않는다는 대답이 34.3%를 차지하였다. 그 중 70명(30.4%)은 불허된 편지가 폐기된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외부인이 수용자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 중 일부분이 삭제된 채 전달받았다고 90명(39.1%)이 대답하였으며, 정치적 내용, 사회문제에 대한 내용, 소내 생활에 대한 내용, 수용자의 처우 현실 등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서신 수발과 관련하여 출소자들은 검열을 철폐할 것과 신속하고 정확하게 서신의 교부와 반출이 이루어질 것, 편지 수발에 대한 불허의 원칙을 명확하게 해 줄 것 등을 의견으로서 개진하고 있다.

응답자 중 180명(78.3%)이 신문을 구독하여 보았다고 했으나, 대부분의 교도소에서 신문을 구독할 수 없는 수용자들을 위해 별도로 신문을 비치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기사 중 일부가 삭제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120명(52.2%)이 자주 있었다고 대답하였고, 75명(32.6%)은 가끔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방송을 통하여 뉴스를 접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65명(28.3%)이 매일 청취할 수 있었다고 하였고, 40명(17.4%)은 가끔 청취할 수 있었으나 92명(42.2%)은 전혀 청취할 수 없었다고 대답하였다.

(3) 금품의 취급

응답자 중 135명(58.7%)은 외부인이 보내준 서적이 교도소측에게 불허된 적이 있다고 대답하고 있다. 그리고 118명(51.3%)은 차입된 잡지 내용 중 일부분이 삭제된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그 대상 잡지로는 『한겨레 21』, 『말』, 『시사저널』, 『주간 내일신문』, 『한겨레신문』 등이었다.

책 구입과 관련해서는 183명(79.6%)이 한 달에 2권 내외의 책을 영치금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4) 종합 평가 및 개선책

(1) 면회

‘최저기준규칙’ 제37조는 “피구금자는 필요한 감독하에 일정 기간마다 가족 또는 신뢰할 만한 친구와의 통신 및 접견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호원칙’ 제19조는 “법률 또는 법률에 따른 규칙에 의하여 합리적인 조건과 제한에 따라 특히 가족의 방문을 받고 가족과 통신할 권리를 가지며, 외부와 교통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에서의 ‘필요한 감독’ 또는 ‘합리적인 조건 및 제한’이란 일반적으로 감독 교도관이 그 면회의 진행상황을 시각적으로 감독할 수는 있지만 면회객과의 구체적인 대화내용을 청취할 수 있는 것은 안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행형법 제18조 제3항 및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의하면, 수용자의 접견은 교도관의 참여하에 이루어지며 접견시의 면담요지까지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행 행형법령은 수용시설의 감독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함으로써 수용자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으며, 실제 면담 내용을 들은 교도관을 통하여 수용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소문이 교도소 내에서 유포되

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특별면회는 수용자가 가족들이나 친지, 교화위원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교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현행보다 그 허가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행형법령이 객관적인 기준의 제시 없이 허가 범위를 소장의 재량권에 위임한 부분은 개정되어야 한다. 특히 기결수의 경우 허가 사유 및 허용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일정한 제한하에서 정기적으로 특별면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적절한 분류처우가 전제되는 상태에서, 분류처우상 높은 등급의 수용자에게는 일반면회 시간의 확대와 자유로운 면회방식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시행령에 의거하여 30분으로 제한되어 있는 접견시간은 지금보다 더 연장되어야 하며 횟수는 월 4회 이상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는 접견시설 및 감독 교도관의 확충과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30분의 면회시간마저도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점은 수용자의 외부 교통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수용자와의 면회는 원칙적으로 차폐시설이 없는 곳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자 또는 상대방의 신체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을 것이다.

(2) 서신 교환

서신의 교환과 관련하여 행형법은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로 수발을 불허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교도소장 등 수형시설 측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서신의 교환은 수용자의 외부 교통권의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수용자가 자신의 의견을 교도소 외부로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불허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설문조사에서 수용자가 행한 범법행위와 전혀 무관하게 정치

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허처분을 받거나 천주교 신자가 기독교 교화위원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서신 발송을 불허한 사례까지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현재 교도소 측의 불허처분의 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점을 드러내는 명확한 징표라 할 것이다.

수용자가 발송하는 서신의 횟수는 월 4회 이상은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수용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변호사, 본인의 일신상·법률상 또는 업무상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국의 영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과의 서신은 횟수나 매수를 제한해서는 안될 것이다.

제6장 운동, 오락 및 종교 활동

도 재 형

1) 국제적 기준

국제기준에서는 “구금조건과 행형제도는 정당한 이유에 의거한 분리 처우 또는 규율 유지에 따르는 처우를 제외하고는, 구금 그 자체가 갖는 고통 이상으로 악화시켜서는 안된다”(‘유럽규칙’ 제64조)는 점과 “시설 내의 생활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충족하고, 일반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생활기준을 확보하여야 한다”(‘유럽규칙’ 제65조)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구금자에 대한 최소한의 운동시간과 정상적인 종교생활, 종교의 대표자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1) 운동과 오락 활동

‘최저기준규칙’ 제21조 ① 실외작업을 하지 않는 모든 피구금자는 날씨가 허락하는 한 매일 적어도 1시간의 적당한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년 피구금자 및 적당한 연령 및 체격을 가진 그밖의 피구금자에

게는 운동시간 중에 체육 및 오락 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 설비 및 용구는 제공되어야 한다.¹⁾

제78조 오락활동과 문화활동은 수형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위하여 모든 시설에서 제공되어야 한다.²⁾

‘유럽규칙’ 제83조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육체적 건전성, 적절한 운동, 여가활동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히 조직된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제84조 그러므로 적절하게 조직된 체육, 운동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은 처우와 훈련제도의 기본구도 및 목적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공간, 설비, 기구가 제공되어야 한다.

제85조 행정당국은 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피구금자가 육체적으로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의사의 지시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구금자에게는 치료적 체육 및 치료법이 부여되도록 특별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제86조 옥외작업을 하지 않거나 개방시설에 수용되지 않은 모든 피구금자에게는 기상조건이 허락하는 한 최소한 매일 1시간의 산보 또는 적절한 운동을 가능한 한 악천후로부터 보호된 상태에서 옥외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³⁾

- 1) 21. ① Every Prisoner who is not employed in out-door work shall have at least one hour of suitable exercise in the open air daily if the weather permits.
- ② Young prisoners, and others of suitable age and physique, shall receive physical and recreational training during the period of exercise. To this end space, installation and equipment should be provided.
- 2) 78. Recreational and cultural activities shall be provided in all institution for the benefit of the mental and physical health of prisoners.
- 3) 83. The prison regimes shall recognize the importance to physical and mental health

(2) 종교 활동

‘최저기준규칙’ 제6조 ① 이 규칙은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피구금자의 ……종교……에 의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② 한편, 피구금자가 속하는 집단의 종교적 신조 및 도덕률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1조 ① 시설 내에 같은 종교를 가진 충분한 수의 피구금자가 있는 경우 그 종교의 자격 있는 대표자가 임명되거나 승인되어야 한다. 피구금자의 인원수로 보아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또 여건이 허락하는 경우 그 조직은 상근제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승인된 유자격 대표자는 정기적인 의식을 행하고 수시로 직접 그 종교 소속의 피구금자를 심방하도록 허가되어야 한다.

③ 종교적 유자격 대표자에 대한 접근은 어떤 종교에서도 어느 피구금자에게도 거부되어서는 안된다. 한편 피구금자가 교역자의 방문을 거절하는 경우 그의 태도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of properly organized activities to ensure physical fitness, adequate and recreational opportunities.

84. Thus a properly organized programme of physical education, sport and other recreational activity should be arranged within the framework and objectives of the treatment and training regime. To this end space, installation and equipment should be provided

85. Prison administrations should ensure that prisoners who participate in these programme are physically fit to do so. Special arrangements should be made, under medical direction, for remedial physical education and therapy for those prisoners who need it.

86. Every prisoner who is not employed in outdoor work, or located in an open institution, shall be allowed, if the weather permits, at least one hour of walking or suitable exercise in the open air daily, as far as possible, sheltered from inclement weather.

제42조 실제적으로 가능한 한 모든 피구금자는 시설 내에서 거행되는 종교행사에 참석하고 또 자기 종파의 계율서 및 교훈서를 소지함으로써 종교생활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⁴⁾

‘유럽규칙’ 제46조 실제적으로 가능한 한 모든 피구금자는 시설 내에서 거행되는 종교행사에 참석하고, 필요한 종교서적들을 소지함으로써 자신의 종교적, 정신적 그리고 도덕적 생활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제47조 ① 시설 내에 같은 종교를 가진 충분한 수의 피구금자가 있는 경우 그 종교의 자격 있는 대표자가 임명되거나 승인되어야 한다. 피구금자의 인원수로 보아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또 여건이 허락하는 경우 그 조치는 상근제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승인된 유자격 대표자는 정규적

- 4) 6. ① The following rules shall be applied impartially. There shall be no discrimination on grounds of ... religion ...
- ② On the other hand, it is necessary to respect the religious beliefs and moral precepts of the group to which a prisoner belongs.
41. ① If the institution contains a sufficient number of prisoners of the same religion, a qualified representative of that religion shall be appointed or approved. If the number of prisoners justifies it and conditions permit, the arrangement should be on a full-time basis.
- ② A qualified representative appointed or approved under paragraph ① shall be allowed to hold regular services and to pay pastoral visits in private to prisoners of his religion at proper times.
- ③ Access to a qualified representative of any religion shall not be refused to any prisoner. On the other hand, if any prisoner should object to a visit of any religious representative, his attitude shall be fully respected.
42. So far as practicable, every prisoner shall be allowed to satisfy the needs of his religious life by attending the services provided in the institution and having in his possession the books of religious observance and instruction of his denomination.

인 의식을 행하고 수시로 직접 그 종교 소속의 피구금자를 심방하도록 허가되어야 한다.

③ 종교적 유자격 대표자에 대한 접근은 어떤 종교에서도 어느 피구금자에게도 거부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피구금자가 어느 종파의 대표의 방문에 반대할 때에는 방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⁵⁾

2) 국내 행정법규

(1) 운동, 오락 활동

행정법 제24조는 “소장은 수용자에게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96조는 “① 소장은 수용자에게 매일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시행한다. 다만, 작업의 종류에 따라 운동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우천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독거수용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동시간을 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법 제33조의 2는 “소장은 수형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

- 5) 46. So far as practicable, every prisoner shall be allowed to satisfy the needs of his religious, spritual and moral life by attending the services or meetings provided in the institution and having in his possession any necessary books or literature.
47. ① If the institution contains a sufficient number of prisoners of the same religion, a qualified representative of that religion shall be appointed or approved. If the number of prisoners justifies it and conditions permit, the arrangement should be on a full-time basis.
- ② A qualified representative appointed or approved under paragraph ① shall be allowed to hold regular services and to pay pastoral visits in private to prisoners of his religion at proper times.
- ③ Access to a qualified representative of any religion shall not be refused to any prisoner. If any prisoner should object to a visit of any religious representative, the prisoner shall be allowed to refuse it.

는 바에 의하여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용자의 정서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동회·연극 또는 영화관람 등을 하게 할 수 있다(시행령 제 113조).

(2) 종교 활동

행형법 제31조 제2항은 “수형자가 그가 신봉하고 있는 종파의 교의에 의한 특별교회(特別敎誨)를 청원할 때에는 당해 소장은 그 종파에 위촉하여 교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회는 원칙적으로 휴업일에 행하며 병실 또는 독거실에 수용된 수용자에 대한 교회는 그의 거실에서 한다(시행령 제107, 108조).

종교 대표자와의 개별적인 접촉에 대해서는 행형법령상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실무적으로는 특별면회의 형식으로 행해지고 있다.

3) 설문조사 분석

(1) 운동, 오락 활동

하루 운동시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120명(52.2%)이 30분 이내, 69명(30.0%)이 1시간 이내라고 대답하였다. 운동시설물의 비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117명(50.9%)은 존재한다고 대답하였으나, 98명은 운동시설이 없으며, 95명(41.3%)은 운동시설을 사용할 수 없었다고 대답하였다. 운동은 대운동장(27.4%)과 사동 사이의 마당(39.1%), 담 옆(16.1%)에서 주로 행하였다.

바둑과 장기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153명(66.5%)은 긍정적으로 대답하였고, 영화관람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112명(48.7%)이 일 년에 한두 차례 관람할 수 있었다고 대답하였다. 대부분의 시설에서 라디오를 청취할 수 있었으며 라

디오 방송의 프로그램은 가요방송과 스포츠중계, 뉴스 등이었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의 채널은 시설 측에서 대부분(93.9%) 결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텔레비전은 134명(58.3%)이 시청할 수 없었다고 대답하였다.

(2) 종교 활동

수용자들이 신봉하는 종교로는 기독교 78명(33.9%), 천주교 34명(14.8%), 불교 12명(5.2%) 등이었다.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70명(30.4%)이 자유스러웠다, 84명(36.5%)이 부자연스러웠다고 대답하였다. 그 이유로는 종교집회 장소의 협소나 감독 교도관의 지나친 규제, 공안사범에 대한 종교집회 참석 제한 등을 들고 있었다.

교도소측이 종교활동을 권장하는 것이 재소자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94명(40.9%)이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

4) 종합 평가 및 개선책

(1) 운동

우리나라 행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용자의 운동시간은 ‘최저기준규칙’이나 ‘유류규칙’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실제 수용자들에게 정해진 최소한의 운동시간(1시간)이 보장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으며, 적절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요구 등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본 설문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교정당국의 적절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예산상의 뒷받침도 함께 요구된다.

(2) 문화 활동

수용자들이 교도소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한다 하더라도 최소

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여러 조건들은 구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로의 복귀를 적절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도 적절한 시간의 라디오 및 텔레비전의 시청이나 영화의 관람이 요구된다.

(3) 종교 활동

종교 활동은 안전상의 제한을 넘어서는 범위가 아닌 한 수용자들에게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며 그것은 교화 목적을 위해서도 당연한 조치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행형법령에는 교회 활동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종교 대표자인 목사, 신부, 승려 등이 신자인 수용자를 심방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재 특별면회의 형식으로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최저기준규칙'은 종교 대표자가 수시로 직접 그 종교 소속의 피구금자를 심방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점과 관련하여 행형법은 오로지 소장의 재량에 좌우되는 특별면회제도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종교활동이 소장의 개인적인 종교적 취향에 좌우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부적당하다고 보여진다.

제7장 여성 재소자

손 민 영

1) 국제기준

(1) 분리 수용

'최저기준규칙' 제8조 상이한 종류의 피구금자는 그 성별, 연령, 범죄 경력, 구금의 법률적 사유 및 이유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분리된 시설 또는 시설 내의 구역에 수용하여야 한다.

a. 남자와 여자는 가능한 한 분리된 시설에 구금하여야 한다. 남자와 여자를 함께 수용하는 시설에서는 여자용으로 할당된 설비의 전체를 완전히 분리하여야 한다."

'유럽규칙' 제11조 ① 피구금자를 다른 시설 또는 관리체제로 분리하

1) 8. The different categories of prisoners shall be kept in separate institutions or parts of institutions taking account of their sex, age, criminal record, the legal reason for their detention and the necessities of their treatment, thus,

a. men and women shall so far as possible be detained in separate institutions : in an institution which receives both men and women the whole of the premises allocated to women shall be entirely separate :

여 수용하기 위해서는 특히 그 재판상 및 법률상의 지위(피고인 또는 수형자, 초범자 또는 상습 재범자, 장기 수형자 또는 단기 수형자), 처우상의 특별한 필요성 및 의학적 상태,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적절한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② 남자와 여자는 원칙적으로 분리해서 구금되지 않으면 안된다. 단, 확립된 처우의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조직된 활동에는 같이 참가할 수 있다.²⁾

‘보호원칙’ 제5조 ① 이 원칙은 국내의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혹은 종교적 신조,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 지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② 법률 규정에 따라 부인(특히 임신부 및 수유중의 모), 어린이, 소년, 노인, 환자, 장애자에 대하여 권리 및 그 특별한 지위를 옹호할 목적으로 고안된 조치는 차별로 간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의 필요성과 그 실시는 사법기관 등으로부터 항상 심사되도록 해야 한다.³⁾

- 2) 11. ① In allocating prisoners to different institutions or regimes, due account shall be taken of their judicial and legal situation(untried or convicted prisoner, first offender or habitual offender, short sentence or long sentence), of the special requirements of their treatment, of their medical needs, their sex and age.
- ② Males and females shall in principle be detained separately, although they may participate together in organized activities as part of an established treatment programme.
- 3) 5. ① These principles shall be applied to all persons within the territory of any given state, without distinction of any kind, such as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or religious belief,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ethnic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or other status.
- ② Measures applied under the law and designed solely to protect the rights and special status of women, especially pregnant women and nursing mothers, children

(2) 임신, 출산

‘최저기준규칙’ 제23조 ① 여자 시설에서는 산전 및 산후의 모든 간호 및 처치를 위하여 필요한 특별한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에는 항상 시설 밖의 병원에서 분만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아이가 시설 내에서 태어난 경우 이 사실을 출생증명서에 기재해서는 안된다.

② 유아가 모친과 함께 시설 내에 있도록 허용되는 경우 자격 있는 직원이 근무하는 유아실을 설치하여 모친이 보살필 수 없는 경우 유아를 보호하여야 한다.⁴⁾

‘유류규칙’ 제28조 ① 가능한 경우는 언제라도 행형시설 외의 병원에서 아이의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별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임신중의 여자를 위해 행형시설에 필요한 직원을 배치하고, 출산 전후의 치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② 어머니인 피구금자와 함께 유유아(乳幼兒)가 시설 내에서 생활하도록 허락된 경우에는 자격 있는 직원이 근무하는 육아실을 설치해야 하고, 유유아가 어머니에게 맡겨지지 않는 동안은 위 육아실에 맡겨져야 한다.⁵⁾

and juveniles, aged, sick or handicapped persons shall not be deemed to be discriminatory, the need for, and the application of, such measures shall always be subject to review by a judicial or other authority.

- 4) ① In women's institutions there shall be special accommodation for all necessary pre-natal and post-natal care and treatment, arrangements shall be made wherever practicable for children to be born in a hospital outside the institution, if a child is born in prison, this fact shall not be mentioned in the birth certificate.
- ② Where nursing infants are allowed to remain in the institution with their mothers, provision shall be made for a nursery staffed by qualified persons, where the infants shall be placed when they are not in the care of their mothers.
- 5) 28. ① Arrangements shall be made wherever practicable for children to be born in

(3) 남자 교정 담당자들의 여자 구금자실 접근 금지

‘최저기준규칙’ 제53조 ① 남녀 피수용자를 함께 수용하고 있는 시설에서는 여자 구역은 그 구역의 모든 열쇠를 보관하는 담당 여자 직원의 관리하에 두어야 한다.

② 남자 직원은 여자 직원의 동반 없이는 여자 구역에 들어갈 수 없다.

③ 여자 피구금자는 여자 직원에 의하여서만 보호되고 감독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남자 직원, 특히 의사 및 교사가 여자 시설 또는 여자 구역에서 전문적인 직무를 행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⁶⁾

2) 국내 행정 법규

(1) 분리 수용

행정법 제4조에 의하면 “남자와 여자는 격리 수용한다”고 규정하

a hospital outside the institution, however, unless special arrangements are made, there shall in penal institutions be the necessary staff and accommodation for the confinement and post-natal care of pregnant women, if a child is born in prison, this fact shall not be mentioned in the birth certificate.

② Where infants are allowed to remain in the institution with their mothers, special provision shall be made for a nursery staffed by qualified persons, where the infants shall be placed when they are not in the care of their mothers.

6) 53. ① In an institution for both men and women, the part of the institution set aside for women shall be under the authority of a responsible woman officer who shall have the custody of the keys of all that part of the institution.

② No male member of the staff shall enter the part of the institution set aside for women unless accompanied by a woman officer.

③ Women prisoners shall be attended and supervised only by women officers, this does not, however, preclude male members of the staff, particularly doctors and teachers, from carrying out their professional duties in institutions or parts of institutions set aside for women.

고 있으며, 95년 1월 5일 행정법 개정 때 “여자인 수용자의 신체, 의류에 대한 검사는 여자인 교도관이 하여야 한다”는 규정(행정법 제10조 제3항)을 신설했다. 여자인 신입자의 목욕시의 참여는 여자 교도관이 해야 하고(행정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수용중인 여자의 목욕에 이를 준용하고 있다(제3항). 수용자를 이송할 때에는 남녀 수용자를 동행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행정법 시행령 제51조).

(2) 건강, 위생

여성 피구금자들의 건강 검진, 위생과 관련하여 따로 규정된 조항은 없으며, 수용자 일반사항으로서 95년 행정법 개정 때 신입자에 대한 지체없는 건강 진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수용자 일반에 대한 사항은 제7장 의료 참조).

(3) 작업, 훈련, 일반 처우

소장은 여자 수용자에게는 화장품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나(행정법 시행령 제94조), 임신중, 출산 후, 기타 여성 피구금자의 수감 조건상 특성을 고려한 규정은 따로 없다.

(4) 임신, 출산

행정법 제30조에 의하면 “임부, 산부와 노쇠자는 병에 걸린 자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부는 수태 후 6월 이상의 부녀자, 산부는 분만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부녀자로 정의하고 있다(행정법 시행령 제106조). 그리고 소장은 여자 수용자의 분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산부를 둘 수 있다(행정법 시행령 제103조 제2항).

(5) 양육, 자녀 접견

행형법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신입의 여자가 소생 유아의 대동을 신청한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당해 소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아의 대동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대동이 허가된 유아가 생후 18개월에 달하거나 소장이 대동 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소장은 그 유아를 보호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인수인이 없을 때에는 그 유아를 당해 교도소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도하여 보호하게 하여야 한다(행형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수용중에 출생한 유아에 대하여도 이에 준한다(행형법 제8조 제4항).

3) 설문조사 분석

전체 응답자 230명 중 여성 피구금자는 32명으로 기본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령 : 20대—20명, 30대—8명, 40대—1명, 50대—2명, 60대—1명
- 결혼 여부 : 미혼—20명, 기혼—11명(무응답 1명은 50대)
- 복역기간 : 1년 미만—26명, 1~2년—1명, 2~3년—2명, 5년 이상—3명
- 피구금지 : 서울구치소(14명) 외 14개소
- 출역 여부 : 미출역—28명, 출역—4명(1~4급까지 각 1명씩)

(1) 분리 수용

신체검사, 목욕, 계호 등 제반 일들이 여자 교도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응답자는 28명(87.5%)이었고, 4명(12.5%)은 그렇지 않았으며 여성 피구금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나, 남성 피구금자 또는 남성 교도관이 주위에서 돌아다니는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응답하였다.

남성 교도관의 여자사동 출입 제한에 대해서는 엄격하다가 13명(40%), 그렇지 않다가 11명(34%), 모른다가 6명(19%)이었으며, 목욕중에도 주위에 남성 피구금자 또는 남성 교도관의 출입이 있었다는 추가설명도 있었다.

분리 수용의 최소 목적은 24시간 모든 일상을 완전히 노출, 감시받는 공간에서 생활하는 여성 피구금자의 최소한의 인권 보장에 있다. 외부인사나 윗사람들의 불시 방문으로, 업무상 불편 때문에, 업무 과중으로 신체검사와 목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소내 생활에서 분리수용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송시에도 마찬가지다.

남녀의 분리 수용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에 따른 필요 시설과 인원의 부족으로 여성 피구금자들은 남성에 비해서도 심각하게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

(2) 건강, 위생

목욕과 샤워 시설에 대해서는 목욕시설만 있었다가 18명(56%), 샤워시설만 있었다가 13명(40.6%)이었으며, 둘다 있었다는 1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설문 내용에서 목욕시설과 샤워시설의 구분이 무엇인지 분명치 않았다.

대개의 수감시설엔 10평 내외의 목욕장과 샤워꼭지가 설치되어 있으나 목욕시 여성 피구금자는 1인당 1말들이 2~3통의 더운물을 지급받는다. 보일러는 거의 여사 바깥에 설치되어 온수는 뜨겁지 않다. 욕조가 있는 경우 여성 피구금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수를 담는 저장고로 쓰인다. 생리, 임신 말기, 산후에도 남성에게 규정된 횟수의 목욕시간 외 별도 규정은 없다.

여성 필수용품(생리대 등)의 구입 형태는 직접구매가 31명(97%)으로 압도적이며, 1명만이 관에서 지급을 받았다. 그러나 기결수인 경우 관에서 월 1봉(10개들이)을 거의 대부분 지급하고 있으며, 이것으

로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므로 구입자는 부족분을 구입하였을 것이다. 필수용품의 질에 대한 질문에는 1명이 좋다고 답하였으며, 그저 그렇다가 17명(53%), 좋지 않다가 14명(43.8%)이었다.

여성 피구금자들이 생리현상을 처리하는 데 13명(40.6%)이 문제가 없다고 했으나, 문제가 있다는 응답자(13명, 40.6%)들은 몸, 속옷, 이불빨래, 기타의 오물을 씻지 못한 불편함(6명), 생리대가 너무 저질이고 한 종류뿐이다(5명), 진통제가 없다(1명), 여사 외부 출입시 신체 검사에서 생리대까지 보여주게 되어 서로 비인격적인 관계(1명) 등을 지적하였다. 세탁물을 삶지 못해 비위생적인 것은 물론 즉시 씻지 못해 심하게 얼룩진 상태로 사용해야 한다.

유일한 여자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의 구매담당을 남자 교도관이 맡고 있을 정도이므로, 다른 모든 구금시설에 이는 공통될 것이다. 남자 교도관과 생리대의 질을 얘기하는 일은 여자 교도관조차 기피한다. 대개의 경우 질이 너무 나빠 거의 흡수가 되지 않아 속옷과 주변은 더러워진다. 그렇지 않은 경우 가장 비싼 최고급품만을 구매품으로 선정하고 있다. 관급품은 싸면서 품질도 괜찮은데 그와 비슷한 물품에 대한 직접구매는 어렵다. 생리의 양에 따라 2가지 이상의 종류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도 구매담당 남성 교도관에게 이해시키기는 어렵다.

시설, 인원에 대한 고려 없는 형식적 분리 수용으로 여성 사동에 병사가 있는 경우는 청주여자교도소 한 곳뿐일 것이다. 따라서 행형법 제30조에서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피구금자는 임·산부는 물론 질병에 걸려도 병사에 입소하지 못하고 일반 사동에 수감되며, 의료나 생활상의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다.

또한 여성 사동에 의무실이 있는 피구금지도 일부에 불과하며, 여성 피구금자 1명 또는 간호사 1명이 상주하는 것 외에 의사가 배치된 곳은 거의 없다. 거의 대부분의 여성 피구금자는 진료 신청을 주1회

이내로 몰아서 해야 하거나 진료시 계호의 문제 등으로 편법적인 진료를 받게 된다. 7년 이상 장기 피구금자가 대부분인 청주여자교도소조차 1명의 의사가 있는데 이도 산부인과 의사가 아니며, 최소한의 여성 질병(임신, 유산, 자궁경부암, 유방암 등)에 대한 정기검진도 없었다. 긴급한 환자 발생시 분리 수용에 따른 절차 과정이 복잡하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남성 피구금자와 달리 머리를 자르는 일은 외부 자원봉사자 등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므로 쉽지가 않다.

이밖에 여성 피구금자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난방이다. 여성의 신체구조상 현재처럼 사동 근무 교도관을 위한 최소 난방만으로는 여성 피구금자들의 건강에 치명적이다. 생리불순으로 응답자 중 1명은 구금기간 생리를 하지 못하였다고 답하기도 하였으며, 출소 후에도 가임 장애를 비롯한 여러 가지 후유증이 예상된다. 특히 병사에 수용되지 못하는 임부, 산부, 여성질병자들의 피해는 심각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작업, 훈련, 일반 처우

직원식당 취사를 거의 여성 피구금자가 담당하고 있으며(29명, 90.1%), 2명만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응답 여성 모두가 수용시설 내에서 화장을 해본 적이 없다고 답하였다. 일반 사회에서 통용되는 상식적인 화장으로 설문을 이해한 듯하다. 그러나 행형법 시행령 94조에서 규정한 화장품이란 누구나 쓰는 여성용 로션, 영양크림 정도를 말하고 있다. 사실, 수용시설 내에서 이런 물품조차 구입하기 어려운 곳이 많다.

이보다 심각한 것은 속옷 등 일상용품을 구입하는 문제이다. 각각의 피구금지에서 여성 피구금자가 소수여서 구입 물량이 적다는 이유 등으로 여성용 속옷, 양말, 신발 구입이 어렵고 남성용만 판매하거나,

치수도 한 가지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는 관급의 고무신, 운동화마저 어린이용이나 남성용을 끌고 다녀야 한다.

청주여자교도소가 유일하게 여성 피구금자에 대한 교육,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구를 비롯한 광역시급 피구금지에 몇 개의 작업공장이 있으나 각 피구금지 직원식당 취사를 여성 피구금자에게 담당케 함으로써 취사부원 확보에 우선하고 있지 않은가 우려된다. 교육, 직업훈련은 출소 후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진급 등 누진처우 혜택 및 가석방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는 여성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법, 시행령 어디에도 임부, 산부의 작업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행형법 시행령 제119조는 노쇠자까지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음과 대조적), 담당 교도관들의 임의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밖에 종교집회 참석도 여성 사동 사무실 또는 교무과 사무실에서 별도로 이루어지는 소규모 모임 참석이 대부분이고, 기타 각종 교화 프로그램 참여나 소내 활동도 거의 할 수가 있다.

사회 견학, 귀휴의 기회 역시 여성 피구금자의 조건을 참작하지 않고 남녀 성비에 따른 인원수별 비율로 기준을 삼거나 아예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 청주여자교도소를 제외한 대부분 피구금지의 실태이다.

(4) 임신, 출산

임신중일 경우 건강 검진을 자격 있는 사람 또는 기관에 의해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응답 22명, 그렇지 않다 10명으로 제대로 되고 있다는 응답은 하나도 없었다.

아이를 어디에서 출산하는가라는 질문에 피구금시설인 구치소나 교도소 안에서 7명(22%), 사회병원에서 8명(25%), 석방되어 출산 1명, 무응답이 16명(50%)이었다. 설문자중 미혼이 20명(62.5%)인데다

구금중 임신한 경험은 1명도 없었으므로 무응답의 비율이 높은 듯하다.

앞의 항목에서 언급한 것처럼 임부와 산부에 대한 대부분의 조치는 규정이 없으며, 병사 등의 시설 없이 일반 여성 피구금자와 함께 수용되어 교도관의 임의 조치를 받을 뿐이다.

외부병원에서 출산하는 경우도 계호상의 문제 등으로 침대에 팔을 수감으로 묶어둔 상태에서 지내며, 입원 시기 판단이 출산 직전에 이루어져 임신중 의료조치가 부적절한 상태로 있었던 점에 비추면 문제가 우려된다. 15일 남짓한 병원생활에서 퇴원하면 난방이 전혀 안되고 비좁은 일반 사동에서 생활하므로 휴식할 상황이 되지 못하고, 담요나 더운 물, 음식물 등에 있어서도 일반 처우를 받으므로 산후 뒷처리도 극히 최소한에 그치고 있다. 물론 의사의 직접적인 관리하에 있지도 않다.

(5) 양육, 기타

피구금자가 신생아(영아)와 함께 있는 경우 산모와 신생아가 제대로 보호받고 있다는 대답이 3명(9%), 그렇지 못하다가 16명(50%)이었고, 13명이 응답하지 않았다.

출산 2개월까지를 산부로 본다는 비현실적 규정이 있을 뿐이며,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데리고 있도록 허락받은 엄마가 아이를 기를 환경 조건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다. 아이의 특수한 물품, 처소, 교육, 건강을 위한 조치(햇볕짜기, 외부진료 등)는 모두 교도관 임의나 자비로 처리된다. 어떤 응답자는 겨울에 아이의 분유를 타먹일 더운 물을 자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18개월 이상이 되거나 하여 아이를 데리고 있지 못하고 소장이 그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인도하여 보호할 경우(행형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어린 자녀의 근황을 알 수 있게 하거나, 면회 등에 대

한 추가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확한 자료가 없으나 성인 여성 피구금자 시설이므로 어린 자녀가 딸린 여성 피구금자의 숫자는 상당할 것이다. 영·유아를 비롯한 취학 전 어린 자녀의 면회도 성인 접견과 마찬가지로 일반면회실에서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10분도 안되는 면회시간(기결 4급일 경우 총 면회 횟수 월 2회 이내)이 주어질 뿐이다.

그 밖에 하고 싶은 말을 서술하는 난에는 물을 마음껏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기결 수용인원이 한 방에 40~50명이라서 비좁다. 머리를 자를 수 있었으면 한다. 칩다, 씻을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 임신·출산 후 등 여성 피구금자의 특수성과 차별성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등의 답변이 있었다.

출소 전과 출소 후의 정신적·육체적 변화로는 “구금기간중 생리가 없어졌다”, “차가운 생활이 여성질환을 유발한다”, “손발이 차고 저리다”, “허리가 아프다”는 응답도 있었다.

4) 종합 평가 및 개선책

여성은 이 사회의 다음 세대를 잇는 중요한 신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여성은 추위와 영양, 운동, 위생 등이 열악한 상태에 있을 때 건강에 더욱 심각한 손상을 받게 된다. 또한 아이에게 엄마는 아빠와의 관계와 또다른 중요한 사회교육의 연결점이다. 여성 피구금자의 문제가 단순히 복잡하고, 함부로 해도 말이 없는 소수의 문제로 치부되어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피구금자로서 최소한의 일반적 인 처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1) 법 규정상의 문제점

- ① 여성 사동에 병사에 준하는 시설과 환경 설치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남성 중심의 병사에 여성 피구금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만큼 여성 사동 내에 이에 준하는 시설 등의 설치가 요구된다. 또한 여성의 신체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온돌난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유산을 한 여성 피구금자의 경우도 산부에 준하여 처우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임부와 산부의 정기검진, 본인 희망시 외부진료가 보장되어야 한다. 최소한 청주여자교도소에는 산부인과 의사가 배치되어야 한다. 장기구금 여성의 경우 검진이 간편한 여성 질병(자궁경부암, 유방암 등)에 대한 정기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 ② 생리, 임신, 출산 등 여성 피구금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목욕, 세탁 등의 규정이 보완되어야 한다. 아울러 임신부의 작업에 대한 규정도 보완되어야 한다.

- ③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데리고 있도록 허용받은 여성 피구금자와 아이를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

아이를 위한 특수한 물품의 구입과 반입, 교육과 건강을 위한 조치가 상세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 ④ 취학 전 아이를 둔 여성 피구금자 및 행형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해당된 경우 면회 등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필요하다.

아이와의 신체적 접촉과 충분한 면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추가적인 면회도 요구된다. 행형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해당된 경우 연 1회 정도라도 아이를 맡고 있는 곳에서 엄마에게 아이의 근황을 알려주고, 아이와 엄마가 면회할 수 있어야 한다.

(2) 운영상의 문제점

여성 사동은 감옥의 담 속에 또 하나의 담으로 둘러쳐져 있다. 남성 피구금자의 경우 사동 근무자와 의무과, 교무과 등의 업무는 구분되어 있으며, 감독 체계도 분명하다. 그러나 여성 사동의 경우 사동

의 업무는 여성 사동 근무자의 사실상 점검을 받는(남성 사동에서 일반적으로 사동 근무자를 경유하는 과정과는 다른) 이중 단계를 거쳐야 하며 책임, 감독 소재도 명확지 않아 문제가 많다.

① 여성 사동에 주임제를 실시해야 한다.

대부분의 여성 사동은 사동 근무자 6명으로 3교대 근무한다. 여성 사동의 임의업무는 직원식당 근무자를 포함하여 7명이 전원 합의하여야 하고, 업무 인계는 담당자간의 인수 인계로 이루어질 뿐 책임자가 없다.

여성 피구금자가 필요한 처우를 받기 위해서는 7명의 교도관의 이해와 합의가 있어야 하고, 때로는 여성 사동 밖에서의 지시조차 여자 교도관 7명의 이해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 담당 주임 배치에 필요한 인원은 뒤에 기술하듯이 현재 직원식당을 담당하는 여자 교도관을 여성 사동에 돌리는 것으로 충분하다. 여성 필수용품, 여성용품 등의 구매문제도 주임이 구매 담당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직원식당 취사를 여성 피구금자가 담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직원식당 취사를 기결 여성 피구금자가 담당하고 있어 그들 중 상당수가 직업훈련, 교육, 가석방 학교 입소 등의 기회를 잃게 된다. 또한 직원식당에 여성 교도관을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여성 피구금자가 각종 교화 프로그램 참여, 운동 목욕 접견 등에 계호할 여성 교도관이 부족하여 그 기회가 줄게 된다.

③ 교육, 훈련, 교화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분리 수용은 여성 피구금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처이지 처우를 제한하는 조치는 아니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교화는 사회적으로 불리한 환경에서 자란 여성 피구금자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며, 더 효과적일 것이다. 최소한 주어진 규정의 범위 내에서라도 인식 부족이나 귀찮음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은 시정되어야

한다.

④ 여성 피구금자의 수용 시설은 온돌난방이어야 한다.

공기난방은 서양인의 기준일 뿐 우리나라 여성의 체질에 적합하지 않다. 교도관들의 숙직시설이 거의 대부분 온돌난방인 것을 보아도 이러한 인식이 타당하다. 그러나 앞서도 지적했듯이 추위는 여성 피구금자, 특히 질병자, 임산부의 건강 및 생명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다.

제8장 건강권과 의료

엄 주 현

1) 국제기준

세계인권선언 제3조에는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감옥 내에 있는 피구금자라고 해서 예외될 수 없다. 오히려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자유를 박탈당하고 정부 권위에 전적으로 내맡겨진 사람들은 약자이므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인 원칙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각국 정부는 피구금자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감시·감독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다.

특히 피구금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은 감옥 내에서 가장 침해받을 소지가 많다. 그래서 ‘최저기준규칙’과 ‘보호원칙’ 등 여러 국제 원칙들은 피구금자의 건강을 보장한 의료권을 중요시하고 있다.

(1) 전문의에 의해 치료를 받을 권리

‘최저기준규칙’과 ‘유럽규칙’에 의하면 수용시설에 자격을 갖춘 전문 의료진이 상주하여 피구금자들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기준규칙’ 제22조 ① 모든 시설에서는 상당한 정신의학 지식을 가진 1명 이상의 자격 있는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의료업무는 지역사회 또는 국가의 일반 보건행정과의 긴밀한 관계하에 조직되어야 한다. 의료업무에는 정신이상의 진찰과 적절한 경우 그 치료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전문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가진 피구금자는 전문시설 또는 일반병원에 이송되어야 한다. 병원설비가 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그 기구, 비품 및 의약품은 병자의 간호 및 치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적절히 훈련된 직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③ 모든 피구금자는 자격 있는 치과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유럽규칙’ 제26조 ① 각 형무시설에서는 적어도 1명의 일반의를 배치해야 한다. 의료업무는 지역사회 또는 국가의 일반보건행정과의 밀접한 관련하에 조직되어야 한다. 의료업무에는 정신이상에 대한 진단 및 필요한 경우에는 그 치료를 위한 정신의학 업무를 포함해야 한다.

② 전문의의 의료처치가 필요한 환자는 전문행형시설 또는 일반병원으로 이송되도록 한다. 입원설비가 시설 내에 준비된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

1) 22. ① At every institution there shall be available the services of at least one qualified medical officer who should have some knowledge of psychiatry, the medical service should be organized in close relationship to the general health administration of the community or nation, they shall include a psychiatric service for the diagnosis and, in proper cases, the treatment of states of mental abnormality.

② Sick prisoners who require specialist treatment shall be transferred to specialized institutions or to civil hospitals, where hospital facilities are provided in an institution, their equipment, furnishings and pharmaceutical supplies shall be proper for the medical care and treatment of sick prisoners, and there shall be a staff of suitably trained officers.

③ The services of a qualified dental officer shall be available to every prisoner.

와 진료를 하기에 충분한 설비, 기구 및 의약품이 비치되어야 한다. 또 충분히 전문 연수를 받은 직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③ 모든 피구금자는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유럽규칙’ 제32조 시설의 의료서비스는 육체적·정신적 질병 및 석방 후의 사회복귀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결함을 검사하고 치료하는 것이다. 일반사회에서 이용 가능한 내과적, 외과적, 정신의학상의 모든 서비스는 피구금자에 대해서도 제공되도록 한다.”

(2) 의료직원에의 접근권

국제원칙에 의하면 피구금자들은 입소한 후 의료진에 의해 건강진단을 위해 면접과 진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소기준규칙’ 24조 의사는 모든 피구금자에 대하여 입소 후 가능한

2) 26. ① At every institution there shall be available the services of at least one qualified general practitioner, the medical services should be organized in close relation with the general health administration of the community or nation, they shall include a psychiatric service for the diagnosis and, in proper cases, the treatment of states of mental abnormality.

② Sick prisoners who require specialist treatment shall be transferred to specialized institutions or to civil hospitals, where hospital facilities are provided in an institution, their equipment, furnishings and pharmaceutical supplies shall be suitable for the medical care and treatment of sick prisoners, and there shall be a staff of suitably trained officers.

③ The services of a qualified dental officer shall be available to every prisoner.

3) 32. The medical services of the institution shall seek to detect and shall treat any physical or mental illnesses or defects which may impede a prisoner's resettlement after release, all necessary medical, surgical and psychiatric services including those available in the community shall be provided to the prisoner to that end.

한 조속히, 그후 필요에 따라 면접하고 진찰하여, 특히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이 있는지를 발견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전염성 또는 접촉성 질환의 의심이 있는 피구금자를 격리하고, 사회복귀에 지장을 주는 신체적, 정신적 결함을 기록하고 작업에 대한 피구금자의 신체적 능력을 판정하여야 한다.

제25조 ① 의사는 피구금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인 건강을 돌보아야 하며 병자와 질병을 호소하는 자, 특히 주의를 끄는 자 전원을 매일 진찰하여야 한다.

제91조 미결수용자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신청하고 모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 자신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과 치료를 받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보호원칙’ 제24조 억류 또는 구금된 자에 대하여는 억류 또는 구금시설에 수용된 후 가능한 한 빨리 적절한 의학적 검사가 제공되어야 하고, 그후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라도 의학적 치료 및 진료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이 치료와 진료는 무료로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4) 24. The medical officer shall see and examine every prisoner as soon as possible after his admission and thereafter as necessary with a view particularly to the discovery of physical or mental illness and the taking of all necessary measures : the segregation of prisoners suspected of infectious or contagious conditions : the noting of physical or mental defects which might hamper rehabilitation, and the determination of the physical capacity of every prisoner for work.

25. ① The medical officer shall have the care of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the prisoners and should daily see all sick prisoners, all who complain of illness, and any prisoner to whom his attention is specially directed.

91. An untried prisoner shall be allowed to be visited and treated by his own doctor or dentist if there is reasonable ground for his application and he is able to pay any expenses incurred.

5) 24. A proper medical examination shall be offered to a detained or imprisoned

‘유류규칙’ 제29조 의료공무원은 모든 피구금자를 입소 후 가능한 한 빨리, 또 입소 후라도 필요하면 진료를 해야 한다. 그 진료는 특히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질환을 발견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며, 접촉성 전염병 또는 기타 전염병의 의심이 있는 피구금자의 격리를 확보하고, 사회 복귀에 방해가 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을 명확히 하며 각 피구금자의 작업상의 적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행해지도록 한다.

제30조 ① 의료공무원은 피구금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관리하고, 병원기준이 정한 조건 및 횟수에 따라 모든 환자, 질병과 상처를 호소하는 모든 사람 및 특히 주의를 요하는 모든 사람을 진료해야 한다.”

(3) 피구금자 건강에 대한 수용시설 최고 책임자 보고 의무

전문 의료진들은 피구금자의 건강이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면 이러한 상황을 수용시설 최고 책임자에게 보고하거나 권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기준규칙’ 제25조 ② 의사는 피구금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

person as promptly as possible after his admission to the place of detention or imprisonment, and thereafter medical care and treatment shall be provided whenever necessary, this care and treatment shall be provided free of charge.

6) 29. The medical officer shall see and examine every prisoner as soon as possible after admission and thereafter as necessary, with a view particularly to the discovery of physical or mental illness and the taking of all measures necessary for medical treatment : the segregation of prisoners suspected of infectious or contagious conditions : the noting of physical or mental defects which might impede resettlement after release : and the determination of the fitness of every prisoner to work.

30. ① The medical officer shall have the care of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the prisoners and shall see, under the conditions and with a frequency consistent with hospital standards, all sick prisoners, all who report illness or injury and any prisoner to whom attention is specially directed.

강이 계속된 구금으로 인하여 또는 구금에 수반된 상황 어느 것에 의해서든 손상되었거나 또는 손상되리라고 판단하는 때는 언제든지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유류규칙’ 제30조 ② 의료공무원은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이 구금의 계속 또는 구금상의 어떤 조건에 의해 손상되고 있거나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때마다 소장에게 권고해야 한다.”

4) 전문의료진의 조언과 최고 책임자 의무

국제 원칙들에 의하면 수감자들의 건강 검진뿐만 아니라 식사량이나 통풍, 난방, 조명 등 수용시설 전반에 대해 검사를 하고 최고 책임자에게 조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최저기준규칙’ 제26조 ① 의사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행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소장에게 조언하여야 한다.

- a. 식량의 분량, 질, 조리 및 배식
- b. 시설 및 피구금자의 위생과 청결
- c. 시설의 위생관리, 난방, 조명 및 통풍
- d. 피구금자의 의류 및 침구의 적합 및 청결
- e. 체육 및 경기를 담당하는 기술요원이 없는 경우 이에 관한 규칙의

7) 25. ② The medical officer shall report to the director whenever he considers that a prisoner's physical or mental health has been or will be injuriously affected by continued imprisonment or by any condition of imprisonment.

8) 30. ② The medical officer shall report to the director whenever it is considered that a prisoner's physical or mental health has been or will be adversely affected by continued imprisonment or by any condition of imprisonment.

준수

② 소장은 의사가 제25조 제②항,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보고 및 조언을 참작하여야 하며, 의사의 권고에 찬동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을 실시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그 제안이 자기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거나 동의하는 경우에 소장은 자기의 보고와 의사의 조언을 즉시 상급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유류규칙’ 제31조 ① 의료공무원 혹은 권한 있는 기관은 정기적으로 순시하고 다음 사항에 대하여 소장에게 조언해야 한다.

- a. 식사 및 물의 분량, 질, 조리 및 배분
- b. 시설, 피구금자의 위생 및 청결
- c. 시설의 위생설비, 난방, 조명 및 환기
- d. 피구금자의 의류 및 침구의 질, 청결도

② 소장은 제30조 제②항 및 제31조 제①항에 따라 의사가 제출한 보고 및 조언을 참작해야 한다. 소장은 제안에 동의할 때 이들 제안을 실시하기 위해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자기의 권한에 속하지 않

- 9) 26. ① The medical officer shall regularly inspect and advise the director upon:
- a. The quantity, quality, preparation and service of food:
 - b. The hygiene and cleanliness of the institution and the prisoners:
 - c. The sanitation, heating, lighting and ventilation of the institution :
 - d. The suitability and cleanliness of the prisoners' clothing and bedding :
 - e. The observance of the rules concerning physical education and sports, in cases where there is no technical personnel in charge of these activities.
- ② The director shall take into consideration the reports and advice that the medical officer submits according to rules 25 ② and 26 and, in case he concurs with the recommendations made, shall take immediate steps to give effect to those recommendations : if they are not within his competence or if he does not concur with them, he shall immediately submit his own report and the advice of the medical officer to higher authority.

은 일의 경우나 혹은 제안에 동의하지 않을 때 소장은 의사의 보고 및 자기의 의견을 상급청에 제출해야 한다.”

(5) 수감자 건강검진 기록의 접근권

전문 의료진의 건강검진에 대해 재소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그 기록의 요구권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수감자의 가혹행위에 대해 감시를 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보호원칙’ 25조 억류 혹은 구금된 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제3자에 의한 2차적 의학적 검사 또는 의견을 사법기관 등에 요구하거나 신청할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 단, 억류 또는 구금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건에서만 예외를 인정한다.

제26조 억류 또는 구금된 자가 의학상의 검사를 받은 사실, 의사의 성명 및 검사 결과는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이들 기록에의 접근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그를 위한 절차는 각 국법의 관련 법규에 따른다.”

- 10) ① The medical officer or a competent authority shall regularly inspect and advise the director upon:
- a. the quantity, quality, preparation and serving of food and water:
 - b. the hygiene and cleanliness of the institution and prisoners:
 - c. the sanitation, heating, lighting and ventilation of the institution:
 - d. the suitability and cleanliness of the prisoners' clothing and bedding.
- ② The director shall consider the reports and advice that the medical officer submits according to rules 30, paragraph ②, and 31, paragraph ①, and, when in concurrence with the recommendations made, shall take immediate steps to give effect to those recommendations : if they are not within the director's competence or if the director does not concur with them, the director shall immediately submit a personal report and the advice of the medical officer to higher authority.
- 11) 25. A detained or imprisoned person or his counsel shall, subject only to reasonable conditions to ensure security and good order in the place of detention or

(6) 기타

또한 이러한 원칙들은 수감자가 소수자라는 이유로 비인간적인 실험을 받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유럽규칙' 제27조 피구금자는 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실험을 받지 않는다.¹²⁾

2) 국내 행정법규

(1) 신입자의 건강진단

95년 행정법 개정 때 신설된 제8조 2항에서는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건강진단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입자의 건강진단은 교도소 등의 의무관이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2조).

(2) 수용자의 건강검진

수용자의 건강검진에 관해서 행정법에는 특별한 조항이 없다. 행정법 시행령 제97조 1항에서 "소장은 독거 수용자 및 20세 미만의 수용자에 대하여는 3개월에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하여야 하고 기타 일반 수용자에 대해서는 6개월에 1회 이상씩 건강진단을 시행해야

imprisonment, have the right to request or petition a judicial or other authority for a second medical examination or opinion.

26. The fact that a detained or imprisoned person underwent a medical examination, the name of the physician and the results of such an examination shall be duly recorded, access to such records shall be ensured, modalities therefor shall be in accordance with relevant rules of domestic law.

12) 27. Prisoners may not be submitted to any experiments which may result in physical or moral injury.

한다"고 하여 시설 내의 재소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소장과 교도소 소속의 의무관은 매주 1회 이상 독거 수용자를 시찰하여야 하며(시행령 제27조), 소장은 수용자의 치료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무관 이외의 의사로 하여금 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시행령 제103조 1항).

(3) 병실 수용과 외부 병원 치료

수용자가 질병에 걸린 경우 소장은 병실 수용과 기타 적당한 치료를 하여야 하며(행정법 제26조), 교도소, 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안에서 수용자에게 적당한 치료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장은 수용시설 밖의 다른 병원에 이송할 수 있다(행정법 제29조 1항).

행정법 시행령에는 외부 병원에 이송하였을 때 수용시설 측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의무관의 진단서와 이송한 병원과의 협의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그 사유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시행령 제105조 1항), 외부의 병원에 이송된 자가 입원의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시 수용시설로 환소시키고 그 사유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항).

또한 수용자가 자비로써 치료를 원하는 때에는 필요에 의하여 소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행정법 제28조).

(4) 전염병 예방

행정법 수용시설의 경우 다수의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법과 행정법 시행령에는 전염병과 관련한 조항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행정법 제25조엔 "소장은 수용자에게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염병에 걸린 수용자에 대해서는

다른 수용자와 격리 수용한다(행형법 제27조). 그리고 소장은 수용자가 전염병에 걸린 때에는 즉시 이를 격리 수용하고 엄중히 소독한 후에 그 상황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시행령 101조 1항). 그럴 경우 교도소의 소재지를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2항). 한편 전염병에 걸린 수용자를 다른 수용자로 하여금 전염병에 걸려 격리한 수용자를 간호하게 할 수 있다(시행령 제102조).

또한 시행령 제98조부터 102조까지는 전염병의 예방조치와 예방접종, 전염병에 걸린 수감자의 조치 등을 제시하고 있다. 소장은 전염병의 유행지를 출발하거나 통과한 수용자에 대하여는 수용한 날부터 1주일 이상 격리시키고 그의 휴대품을 소독하여야 한다(시행령 제98조). 소장은 수용자에게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99조),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는 자비로 부담한 음식물의 공급을 금지할 수 있다(100조).

(5) 기타 의료 문제

그 외에도 수용자가 진료나 음식물 섭취를 거부하여 생명에 위험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소장은 교도소 등의 의무관으로 하여금 적당한 진료 또는 영양 보급 등의 의료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시행령 97조 2항).

그리고 질병이 위독한 중환자의 경우 소장은 그 사유를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시행령 104조).

3) 설문조사 분석

(1) 입소 직후의 건강진단

교도소·구치소 입소 직후에 자격이 있는 의사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았다는 응답자는 60명(26.1%)이었고, 162명(70.4%)은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입소 직후 받은 건강진단의 종류로는 키재기(96명, 18.2%), 몸무게 측정(102명, 19.3%), 혈압 검사(67명, 12.7%), X-Ray 촬영(53명, 10.0%), 시력 검사(46명, 8.7%), 치아 검사(30명, 5.7%), 피 검사(18명, 3.4%), 소변 검사(16명, 3.0%) 등이었다. 그리고 의사가 청진기를 대고 진찰한 경우는 21명(4.0%)으로 나타났다. 그밖의 답변으로 의사가 구두로 이것저것 질문을 했고 이에 대해 답을 했다는 경우도 17명이나 되었다.

(2) 수감시설 내의 정기검진

수감 중 의사(의무관)의 정기검진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응답자는 136명(59.1%)이었고, 79명(34.3%)이 정기검진을 받아본 일이 있다고 답했다. 15명(6.5%)은 응답을 하지 않았다.

정기검진을 받아본 일이 있었다고 답한 사람들 중에 1년에 1번이 24명이었고, 6개월에 1번은 22명이었다. 그 외에 1개월에 1번(3명), 2개월에 1번(2명), 3개월에 1번(4명), 4개월에 1번(1명), 8개월에 1번(1명) 등의 답도 있었다.

(3) 수감시설 내 전문 의료진

교도소·구치소에 치과의사나 치과 전문 공중보건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72명(31.3%)이 있었다고 답했고, 89명(38.7%)이 없었다고 대답했다. 그밖에 60명(26.1%)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수감시설 내에 약사가 있었다는 응답자가 72명(31.3%)이었고, 70명(30.4%)이 없었다고 답했으며, 82명(35.7%)이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한 아파서 의무과에 갈 경우 75명(29.4%)이 의무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았고, 공중보건의(45명, 17.7%)나 교도관(56명, 22.0%), 같은

재소자(8명, 3.1%)에게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밖에 45명(17.6%)은 진료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 외의 진료자들로는 약사와 간호사가 각각 2명으로 나타났으며, 진료자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번갈아 진료를 했다고 답한 사람과 X-Ray 기사에게 진료를 받았다는 사람이 1명씩 있었다.

의무과에서 약을 조제한 사람은 의무관(34명, 14.2%), 약사(29명, 12.1%), 교도관(38명, 15.9%), 다른 재소자(19명, 8.0%) 등이었다. 그러나 누가 약을 지었는지 모르겠다는 답이 102명(42.68%)으로 가장 많았다. 기타 답변으로 간호사(3명), 공중보건의(1명), X-Ray 기사(1명)도 있었다.

(4) 병에 걸린 경험과 가족의 병 수발

교도소·구치소에서 119명(51.7%)이 병에 걸린 적이 있다고 답변했으며, 92명(40%)은 없다고 답했다. 병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들 중 33명이 감기에 걸렸으며, 15명이 동상, 13명이 피부병, 11명이 치아로 고생했다고 답했고, 기타 병명으로는 비염(7명), 위장병(9명), 관절염(5명), 고혈압(5명), 요통(4명), 눈병(4명), 치질(4명), 당뇨(3명) 등 다양한 답이 나왔다.

그리고 병에 걸렸을 때 10명(4.3%)만이 가족의 뒷바라지를 받을 수 있었으며, 145명(63%)은 받을 수 없었다고 답했다.

(5) 병동 입원과 외부 병원 진찰

병에 걸렸을 때 병동에 입원하기가 수월했다는 답은 7명(3%), 보통의 경우는 5명(2.2%)에 불과했고, 힘들었다가 48명(20.0%), 아예 불가능했다가 68명(29.6%)이나 되었다(102명(44.3%)은 무응답).

또한 외부 병원의 진찰을 신청한 경험은 47명(20.4%)이 있었으며, 151명(65.7%)은 없었다고 답했다. 위장병(8명), 치통(5명), 골절상(3

명), 동상(2), 전립선염(2) 등의 병명으로 외부 진찰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신청에 의한 외부 진찰은 4명(1.7%)만이 언제나 가능했다고 답했고, 56명(24.3%)은 돈 없이는 어려웠다고 답했다. 한편 86명(37.4%)은 돈이 있어도 어려웠다고 답했다.

(6) 약품 차입, 병과 관련한 물품 보급

외부에서의 약품 차입에 대해서는 31명(13.5%)이 가능했다, 45명(19.6%)이 어려웠다, 77명(33.5%)이 불가능했다고 답했다. 그리고 외부 약품의 차입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답한 사람도 47명(20.4%)이나 되었다.

병에 걸린 수감자들에게 겨울에 보온통(유단뽀)을 지급 받은 일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5명(21.7%)만이 지급받았다고 답했고, 93명(40.4%)은 지급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보온통을 지급 받지 못한 이유로는 부족하다(6명), 아예 보온통을 지급하지 않는다(4명), 그 외에 매물 목록에 없다, 너무 환자가 많아서, 또는 보온통을 지급 받는 줄을 몰랐다는 등 다양했다.

4) 종합평가 및 개선책

(1) 법 규정상의 문제점

국제원칙을 보면 수용자의 건강에 대해 상당히 자세하고도 심도 깊은 보장을 하고 있다. 그것에 비하면 우리나라 행형법률들에 나타난 수용자 의료권은 대단히 빈약하다. 신입 수용자의 건강진단 조항이 95년에야 신설되었을 정도이므로 그 외의 조항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수감자 의료권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자격 있는 전문 의료진이 수용시설에 상주하면서 수용자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행형법이나 시행령에는 이러한 구체적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97년 국정감사 때 법무부 교정국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39개 교정시설에 129명의 의료진이 있으며, 그 중 의사가 60명이고 약사가 2명, 간호사가 60명, 보건기사가 7명, 공중보건의가 28명으로 밝혀졌다. 당시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된 전체 인원이 6만 2,125명으로, 수용자 1,035명을 1명의 의사가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형편이었다. 더욱이 IMF 관리체제 이후 경제사범이 급증하면서 법무부가 발간한 『한국의 교정행정』이라는 책자엔 98년 6월 10일 현재 7만 1,214명의 재소자가 수감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수감시설의 특성상 24시간 내내 전문 의료진이 상주해야 한다는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최저기준규칙' 제22조 3항과 '유럽규칙' 제26조 3항에 의하면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의 치료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수용자의 치아 건강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에 우리의 행형법령에도 이러한 구체적인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아울러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진단할 전문 의료진도 수용시설에 상주하여 수용자들을 진료하고 상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형법 제29조 1항에 의하면 "적당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장은 수용시설 밖의 다른 병원에 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소장의 재량 사항으로 정해진 이러한 규정으로는 몇 단계의 결제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우리의 현실로 보았을 때 수용자의 의료권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수용시설의 설비만으로 수용자의 진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외부 일반 병원에 반드시 이송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해야 한다. 실제로 설문조사에 의하면 단 1.7%만이 외부 병원의 진료가 쉽게 이루어졌다고 답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명문화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수용자들은 오직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권리도 침

해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의료 시설이 부족한 현재의 상황에서는 외부 진료권은 인간의 기본권인 건강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통로이다.

우리의 행형법령 등을 보면 수용자들이 진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소장은 무엇을 할 수 있다" 식으로 되어 있다. 이는 소장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조항들이므로 행형법과 시행령에 수감자들의 진료 요구권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최저기준규칙' 제25조 1항 "병자와 질병을 호소하는 자, 특히 주의를 끄는 자 전원을 매일 진찰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좋은 예라고 하겠다.

우리의 행형법령 등에는 미결수용자에 대한 의료권 조항은 아주 미흡하다. 행형법에는 아예 미결수용자의 의료권 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시행령 제176조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경우에는 교도관 및 의무관이 참여하고 경과를 신분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이는 '최저기준규칙' 제91조에 "미결수용자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신청하고 모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 자신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과 치료를 받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의료권을 보장하는 것에 비하면 미흡한 수준이다.

미결수용자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취급받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이러한 조항들이 규정되어야 명확한 인권보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용시설에 상주하는 전문 의료진들에 대한 의무조항들도 미흡하다. 특히 의료진들은 단순히 수용자들의 건강을 진료하고 상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들의 건강 상태에 대해 최고 책임자에게 보고할 의무까지 규정되어야 한다. 더불어 수용자들의 신체 및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환경을 검사하고 수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책임자에게 보고와 조언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최

고 책임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상급기관에 이러한 상황을 보고해 전반적으로 수용시설이 좋은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무 규정을 두어야 한다.

수용자들의 건강검진 기록에 대해 잘못 사용될 여지를 제외하고는 손쉽게 요구할 수 있도록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건강검진에 대한 접근권의 경우 재소자와 그 외의 사람들이 수용자 의료권을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형식적인 건강검진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접근권에 대해선 '최저기준규칙' 과 '보호원칙' 등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2) 운영상의 문제점

행형법령 등에 의료권과 관련해 구체적인 조항의 미비로 수용자들이 만족할 만한 의료권을 행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더욱이 행형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교정 당국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료진과 교도관의 확보가 힘들다고 항변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교정 당국이 수용자도 인권을 당연히 보장해야 하는 하나의 주체로 보기보다는 벌을 주어야 하는 범죄자로 보는 시각이 남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행형법 제8조 2항에 의하면 신입자에 대해 지체없이 건강진단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매우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소 직후 의사에 의해 건강진단을 받았다고 답한 사람이 26.1%에 불과하고,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진단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건강진단의 종류도 단순한 신체검사에 그치고 있어 건강진단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신입자의 건강진단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수용자들에 대한 건강검진도 행형법령과는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행령 제97조 1항에는 “소장은 독거 수용자 및 20세 미만의 수용자에 대하여는 3개월에 1회 이상, 기타 일반 수용자에 대해서는 6개월에 1회 이상씩 건강진단을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용생활 내내 건강검진 자체를 받지 못한 수용자들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59.1%의 수용자들이 정기검진을 받아본 일이 없고, 34.3%만이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답했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답한 수용자들 중에 24명이 1년에 한 번 받았다고 답했으며, 규정대로 6개월마다 받은 사람은 22명이었다.

또한 수용자들의 건강을 책임지기에는 수용시설의 전문 의료요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제대로 된 진료를 보장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큰 병으로 키우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리고 전문 의료요원이 부족하여 교도관이나 재소자까지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 의사의 경우 64.8%, 약사는 66.1%가 없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우리의 행형법령 등에는 미약하긴 하지만 병에 걸린 수용자에 대해 병실 수용을 허가하고 있고, 수용시설에서 제대로 된 진료가 불가능할 경우 외부 진료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은 교도관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의 무시되고 있는 형편이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수용자 중 반 이상이 병에 걸린 경험은 있지만 병동에 입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병에 걸렸을 때 병동에 입원하기가 수월했느냐는 물음에 5.2%만이 수월하거나 보통이라고 답했고, 50.5%가 힘들거나 불가능했다고 답했다.

수감시설 내의 병동에 수용되는 것이 이렇게 힘든 현실이니 외부 병원의 진찰은 상상도 할 수 없다. 특히 자비로 진찰을 받는 것도 어려웠다고 답한 사람이 37.4%에 이르러 행형법에만 문서로 존재할 뿐 실질적 운영은 거의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장기간 입원치료를 요하는 수용자와 일반시설에서 치료하기 힘든 재소자를 위한 특별 의료교도소가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교정국에서 발간한 『교도소 어떻게 달라졌나』(98년 8월 24일)라는 홍보책자에 의하면 “결핵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전 수용자에게 연 1회 이상 X-Ray 검진을 실시하고, 확인된 환자에 대하여는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장기치료를 요하는 결핵환자 및 정신질환자는 별도로 설치된 의료 교정시설에 집결 수용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특별 의료교도소는 진주교도소에서만 운영하고 있어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서울·광주·대전 지방교정청 산하에 각각 1개 교도소를 의료 중점 교도소로 지정해 재소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향상할 계획이라고 밝혀 수감자 의료권의 확대가 기대된다.

특히 기·미결수용자에 대한 의료보험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운영되어야 한다.

현재 의료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근거해 교도소 등에 수용된 수용자는 그 기간 동안 보험급여 정지대상으로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97년 법사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수용자 1인당 1년간 의료비가 3만 7,784원으로 배정되어 있어 외부 진료를 받을 경우 수용자나 수용시설 측의 부담이 커 치료비를 둘러싼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이로 인해 교정시설 측에서도 외부 진료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재소자에게도 의료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의료보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제9장 수용시설

최정학

1) 국제기준¹⁾

‘자유권규약’ 제10조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간의 고유한 존엄에 기초한 인간적인 처우를 받아야 한다.”

‘보호원칙’ 제1조 모든 형태의 억류 또는 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 고유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인도적으로 처우되어야 한다.”

‘최저기준규칙’ 제9조 ① 취침 설비가 각 방마다 설치되어 있을 경우 개개의 피구금자마다 야간에 방 한 칸이 제공되어야 한다. 일시적인 인원

1) 이 해설은 1995년 4월 카이로에서 열린 제11차 범죄방지회의에 국제형사개혁위원회(Penal Reform International)가 제출한 「Making Standards Work」라는 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다.

2) 10. All persons deprived of their liberty shall be treated with humanity and with respect for the inherent dignity of the human person.

3) 1 Persons under Any Form of Detention or Imprisonment, Principle 1
All persons under any form of detention or imprisonment shall be treated in a humane manner and with respect for the inherent dignity of the human person.

과잉 등과 같은 특별한 이유로 중앙 교정 당국이 이 규정에 대한 예외를 둘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방 한 칸에 2명의 구금자를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② 공동침실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환경에서 서로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는 피구금자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시설의 성격에 맞추어 야간에 정기적인 감독이 수행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피구금자에게는 독방이 제공되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에 2명 이상이 방을 같이 사용할 때에는 여러 조건에 유의하여야 한다. 공동수용은 여러 문제점 때문에 교도관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폭력 행위를 한 전례가 있는 피구금자는 공동수용되어서는 안된다. 또 피구금자가 공동수용에 적절할 것인가에 대해 교도관이 충분히 알고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야간 감독을 위해서 경비는 규칙적인 간격으로 순찰하여야 한다. 또 시설 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항상 알 수 있도록 (소리가) 들릴 수 있는 거리 내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순찰은 피구금자를 방해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수면중인 피구금자를 깨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저기준규칙' 제10조 피구금자가 사용하도록 마련된 모든 설비, 특히 모든 취침 설비는 기후상태와 특히 공기의 양, 최소공간, 조명, 난방 및 환기에 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함으로써 건강유지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

- 4) ① Where sleeping accommodation is in individual cells or rooms, each prisoner shall occupy by night a cell or room by himself. If for special reasons, such as temporary overcrowding, it becomes necessary for the central prison administration to make an exception to this rule, it is not desirable to have two prisoners in a cell or room.
- ② Where dormitories are used, they shall be occupied by prisoners carefully selected as being suitable to associate with one another in those conditions. There shall be regular supervision by night, in keeping with the nature of the institution.

추어야 한다."

많은 나라의 감옥규정은 이 기준보다 더 구체적일 것이다. '최저기준규칙'은 이 점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일반적인 규정만을 하고 있다. 각 나라의 특수한 사정(예컨대 극지방과 열대지방)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제10조의 핵심 부분은 수용시설이 피구금자의 건강의 모든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데에 있다. 여기에서 '모든 요건'이란 요건이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수용조건은 피구금자의 건강에 어떤 방식으로든 해를 미쳐서는 안된다. 통풍이 안되거나 출거나 습기찬 방에서의 수면은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될 것이다. 오랜 시간을 비좁은 방에서 보내는 것은 특히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 근육을 위축시킬 것이다. 작업을 하는 피구금자와 하지 않는 피구금자가 있다면 과잉수용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후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져야 한다. 그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최저기준규칙' 제11조 피구금자가 기거하거나 작업을 하여야 하는 모든 장소에는,

- a. 창문은 피구금자가 자연광선으로 독서하거나 작업을 할 수 있을 만큼 넓어야 하며, 인공적인 환기장치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 b. 인공조명은 피구금자가 시력을 해치지 아니하고 독서하거나 작업하기에 충분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 5) All accommodation provided for the use of prisoners and in particular all sleeping accommodation shall meet all requirements of health, due regard being paid to climatic conditions and particularly to cubic content of air, minimum floor space, lighting, heating and ventilation.

수용시설의 모든 방은 내부에 전기 스위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불을 켜거나 끄는 결정을 피구금자가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불필요한 무력감이나 좌절감을 더하기 때문이다.

‘최저기준규칙’ 제12조 위생설비는 모든 피구금자가 필요할 때 청결하고 단정하게 생리적 욕구를 해소하기에 적합해야 한다.”

생리적 욕구 문제는 ‘인간의 존엄’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피구금자의 자긍심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여기에서 피구금자가 필요할 때 언제나 화장실에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즉 그것이 교도관의 의사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 화장실은 덮개가 있어야 하며 생활공간과 분리돼 있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되어야 한다.

‘최저기준규칙’ 제13조 적당한 목욕 및 샤워설비를 마련하여 모든 피구금자가 계절과 지역에 따라 일반 위생상 필요한 만큼 자주 기후에 알맞은 온도로 목욕하거나 샤워 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할 의무가 부과되어야 하되, 단 온대기후의 경우 그 횟수는 적어도 매주 1회 이상이어야 한다.”

- 6) In all places where prisoners are required to live or work,
 - a. The windows shall be large enough to enable the prisoners to read or work by natural light, and shall be so constructed that they can allow the entrance of fresh air whether or not there is artificial ventilation;
 - b. Artificial light shall be provided sufficient for the prisoners to read or work without injury to eyesight.
- 7) The sanitary installations shall be adequate to enable every prisoner to comply with the needs of nature when necessary and in a clean and decent manner.
- 8) Adequate bathing and shower installations shall be provided so that every prisoner may be enabled and required to have a bath or shower, at a temperature suitable

모든 피구금자가 원할 때마다 샤워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먼지가 많이 나는 작업을 하는 피구금자는 일이 끝난 후에 샤워 할 수 있어야 한다.

‘최저기준규칙’ 제14조 피구금자가 평소에 사용하는 시설의 모든 부분은 항상 적절히 관리되고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최저기준규칙’ 제63조 ③ 폐쇄시설에서 수형자의 수는 개별처우가 방해받을 정도로 많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 몇몇 나라에서는 이들 시설의 수용인원이 500명을 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개방시설의 수용인원은 가능한 한 적어야 한다.¹⁰⁾

이외에도 ‘유럽규칙’은 수용시설에 관한 부분에서(제14조에서 제19조)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과 거의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 국내 행정법규

행정법 제11조 ①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혼거수용할 수 있다.

to the climate, as frequently as necessary for general hygiene according to season and geographical region, but at least once a week in a temperate climate.

- 9) All parts of an institution regularly used by prisoners shall be properly maintained and kept scrupulously clean at all times.
- 10) ③ It is desirable that the number of prisoners in closed institutions should not be so large that the individualization of treatment is hindered. In some countries it is considered that the population of such institutions should not exceed five hundred. In open institutions the population should be as small as possible.

② 혼거수용의 경우에는 수용자의 형기, 죄질, 성격, 범수, 연령, 경력 등을 참작하여 거실을 구별 수용한다.

③ 작업장의 취업에 있어서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행형법 시행령 제31조 (혼거수용) 소장은 시설 등의 사정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용자를 혼거수용할 수 있다.

행형법 시행령 제33조 (혼거수용의 기준) 혼거실에는 3인 이상의 자를 수용한다. 다만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행형법 시행령 제77조 (생활용구의 비치) ① 소장은 거실 또는 공장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구를 비치하게 할 수 있다.

② 거실, 공장에 비치하는 기구의 품목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정한다.

③ 거실과 공장에는 비치된 기구의 품목, 수량을 기재한 품목표를 붙여야 한다.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50조 (거실장식) ① 제1급 수형자의 거실에 는 다음의 비품을 둘 수 있다.

1. 책상 2. 서화 3. 화분 4. 거울 5. 시계

② 제2급 이상의 소년수형자에 있어서도 제1항과 같다.

3) 설문조사 분석

수용시설과 관련하여 설문조사된 항목은 수용 형태(독거 여부), 감방의 넓이, 조명, 환기상태, 화장실, 난방, 수도시설, 책상·거울·시계 등의 비치 여부, 창문 등에 관한 것이다.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수용 형태에서는 독거의 경우가 33%이고 혼거수용이 50%로 조사돼서 여전히 혼거수용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독거시설에 수용된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조사대상

자 중 다수가 이른바 공안사범이어서 일반 재소자의 경우와는 달리 독방에 수용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¹¹⁾

우리 행형시설의 평균 수용밀도가 높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평당 수용인원은 약 2명 정도이다. 그러나 이것은 독거실과 혼거실을 합하여 계산한 결과이며 혼거실만 고려한다면 숫자는 더 높아진다.¹²⁾

이 같은 결과는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된다. 감방의 넓이에 대한 질문에 답할 정도로 비좁다고 응답한 사람이 68.7%였으며, 약간 비좁다고 답한 사람이 20.9%여서 좁다고 느끼는 재소자가 전체의 약 90%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감방의 조명에 대해서는 책 보는 데 지장이 많다고 답한 사람이 46.5%, 다소 지장이 있다는 대답이 33.9%로 지장이 없다고 대답한 13.9%에 비해 압도적인 다수가 감방의 조명을 불충분한 것으로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감방의 전깃불은 형광등인 경우도 있으나(조사대상 중 24건) 대다수가 백열등이며 밝기는 60와트 이상인 경우가 23건인데 비해 30와트 이하인 경우도 43건이나 된다. 그리하여 수감 전에 비해 시력이 다소 나빠졌다는 사람이 45.2%, 매우 나빠졌다는 사람이 25.2%로 전체의 약 70%가 시력이 나빠졌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취침중에 소등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응답도 있었다.

감방의 환기상태에 대해서는 환기가 되지 않아 실내 공기가 탁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49.6%인 반면 보통이라는 응답은 41.3%이고 환

11) 참고로 전체 행형시설의 독거수용과 혼거수용의 비율을 보면 절대적으로 혼거수용이 많다. 90년을 기준으로 전국 38개 행형시설에 1만 1,165개의 수용방이 있는데, 그중 독거방은 4,203개, 혼거방은 6,962개로 전체 피구금자 5만 4,989명 중 7~8%만이 독방을 사용하고 있다. 법무부, 「행형부조리 실태 및 방지대책」, 1994, 69쪽.

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교정처우의 현황과 개선 방안」, 1992, 122쪽.; 법무부, 위의 책, 69쪽.

기가 잘 되어 공기가 맑았다는 응답은 7%에 불과하여, 심각할 정도의 문제는 없으나 전체적으로 환기가 잘되는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다.

화장실은 재래식인 경우가 47%, 수세식인 경우가 51.7%로 수세식으로 많이 교체되었으나 아직도 재래식인 경우와 반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화장실의 위생상태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위생적이라는 응답이 9.6%에 불과한 데 반해 비위생적이라는 응답이 29.1%, 매우 비위생적이라는 응답이 29.6%에 달해 전체 약 60%가 화장실이 비위생적이라고 답하였다. 구체적으로 화장실의 냄새가 매우 심하다는 사람이 26.5%, 심하다는 사람이 22.2%로 약 49%가 화장실에서 나는 악취를 지적하고 있다. 그밖에 악취가 심한 경우에는 피부질환까지 일으킨 사례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화장실의 면적이 지나치게 좁으며 세면, 세탁 시설과 함께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불편하고 비위생적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또 수세식의 경우에는 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재래식의 경우에는 분뇨수거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비위생 상태가 초래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현재 우리 교도소의 화장실의 위생상태에 대한 배려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겨울철 감방의 온도에 대해서는 춥다고 답한 사람이 30.4%, 매우 춥다고 답한 사람이 48.7%나 되어 전체의 약 80%가 난방이 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뜻하다고 답한 경우는 조사대상자 중 단 1명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동상에 걸린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57.4%나 되며 대체로 발이나 귀, 손 부위에 동상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감방 내에 난방시설이 있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72.6%가 없다고 답하여 위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 사동복도에는 난방시설이 있으나 연탄난로인 경우가 73.9%인 반면 석유난로와 스팀은 각각 3.9%와 7%에 불과하여 효과적인

난방이 전혀 되지 않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밖에 겨울에도 찬 바닥에 깔판을 깔지 못하게 한다고 답한 경우도 있었다. 설문으로 조사되지는 않았으나 여름철 냉방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여름에는 더위를 참기 힘들어 폭행사건이 많이 일어난다고 답한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 감방에 습기가 차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많이 차는 편이라는 응답이 38.3%이고 불쾌할 정도로 아주 많이 찬다는 답도 32.2%에 달해 전체의 71%가 감방 내 습도가 지나치게 높음을 지적하였다. 영등포구치소의 경우에는 비가 오면 물이 새서 천장에 비닐을 치고 있어야만 했다고 한다. 이밖에 항상 이불이 축축했다고 답한 경우도 있다. 반면 습기가 차지 않는다는 답은 불과 전체의 4.3%에 지나지 않았다. 또 감방 내에 수도시설의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51.7%가 없다고 답한 반면 있다는 응답은 47.4%여서 아직도 절반 이상의 감방에 수도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감방에 책상이 있다고 답한 경우는 19.1%인 데 반해 없다는 경우는 80%나 됨으로써 아직 책상과 같은 비품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으로 보인다. 감방 안에 거울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약 절반인 51.7%가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시계를 볼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65.7%가 없었다고 함으로써 약 2/3정도의 감방에는 시계조차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감방의 창문에 비닐이 쳐져 있는 경우가 63.9%이고 아크릴판이나 플라스틱이 끼워져 있는 경우도 20.4%나 되었다. 반대로 유리가 끼워져 있는 경우는 13.5%에 불과한데, 이것은 자연채광과 관련하여 현재의 감방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즉 감방 내 재소자가 적당한 정도의 일조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다. 실제로 창문이 너무 높고 작아 햇빛이 잘 들지 않는다는 응답도 있었다.

4) 평가 및 개선책

재소자에게 수용시설은 일반인에게 집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그들이 기거하고 작업하는 생활환경인 것이다. 그러므로 재소자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를 제공해 준다는 것은 다소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현대에 와서 자유형의 의미가 단지 '자유'의 박탈'에만 한정되고 그 밖의 모든 인간적인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으로 받아들여짐에 따라 일정한 수준 이상의 수용시설은 이제 재소자의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또 인간적인 생활조건은 재소자의 자기 존엄, 자긍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특별예방'이나 '재사회화' 같은 행형 목적의 달성 여부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도 행형시설은 보완될 필요가 있다.

국제기준들은 이러한 '인간존엄'의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 즉 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자유권조약'을 비롯해 '보호원칙' 등은 피구금자의 처우가 인간적인 것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선언하고 있다. 이것은 피구금자의 처우에 관한 일반 원칙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행형법규는 이러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행형법규나 제도 전체에 걸쳐 이러한 생각이 바탕이 되고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차제에 이와 같은 일반원칙의 수용이 깊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수용조건에 관한 조항들이 규정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우리 행형법규에는 수용시설에 관한 별반 조항이 없다. 단지 행형법 시행령에 따라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구를 비치"할 수 있을 뿐이다(제77조). 그것도 비치하는 기구의 품목은 소장의 재량 사항이며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같은 조 2항). 단적으로 말해서 우리의 법규는 재소자의 생활에 전혀 무관심한 것이다. 그러

므로 이러한 입법의 불비는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형법에 수용시설에 관한 일반적인 조항을 두고 시행령은 보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는 국제연합의 '최저기준규칙'과 같은 국제기준의 내용이 최소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특히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수용시설에 관하여 현재와 같이 재량 사항으로 규정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현실적인 실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령으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수용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그러면 법규와는 별도로 현실의 수용시설은 어떠한지 설문조사에 나타난 각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용 형태와 관련하여 국제 기준은 특별한 경우의 예외를 제외하고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혼거수용하는 경우에도 재소자들이 서로 잘 어울릴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행형법도 규정상으로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제11조). 그러나 실제에서는 혼거수용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이것은 수용시설의 절대적인 부족에도 기인하는 것이지만 교도관의 부족으로 기존 시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¹³⁾

좁은 방에 여러 사람을 수용하는 우리의 관행은 재소자 개인에게 최소한의 거주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 최소 생활공간의 확보는 재소자의 건강에 필수적인 것이며 처우의 인간적 원칙에 합치하는 것이다. 또 이런 관점에서 감방의 조명, 환기시설, 냉난방 여부, 창문의 설치 등이 접근되어야 한다. 국제 기준은 이러한 여러 조건들이 재소자의 건강에 해를 미칠 정도여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조명은 작업이나 독서에 충분한

1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위의 책, 103쪽.

것이어야 하고 감방에는 신선한 공기가 유입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재소자가 자연광선에 충분히 노출될 수 있도록 창문이 크고 넓게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설문조사에 나타난 우리의 감방 현실은 이와는 거리가 너무나 먼 것으로 보인다. 어두운 불빛과 탁한 공기,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좁고 눅눅한 방, 마치 중세의 지하감옥을 연상케 하는 이것이 21세기를 눈앞에 둔 우리의 행형현실인 것이다.

감방의 위생시설과 관련해서는 항을 달리하여 살펴보겠지만, 특히 화장실과 관련하여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우리 감방의 화장실은 좁고 사용하기 불편하며, 위생상태는 아주 불결한 것으로 보인다. 창문이나 환기와 같은 기본적인 시설도 갖추어지지 않은 현재의 감방을 생각할 때 이런 정도의 화장실 상태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우리의 행형당국이 재소자의 건강이나 생활에 대해 철저히 무관심하며 아무런 배려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행형시설의 확충과 개량을 위한 예산상의 투자가 요구되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면 우선은 현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교도관리들의 성실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때 행형에 대한 예산 등 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 실무에 있어서 재소자에 대한 인간적 처우가 기본원칙으로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 행형법규는 책상이나 거울, 시계와 같은 일상용품의 지급에 대해서 이를 소장의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행형법 시행령 제77조). 이에 따라 법무부령인 수형자분류처우규칙에서는 1급 수형자의 거실에 책상이나 서화, 화분 등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재량 규정의 결과 현실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기본적인 생활비품이 대다수의 교도소에서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간적인 처우' 원칙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비

품의 지급이 너무나 기본적인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최근 법무부는 98년 6월부터 수용거실에 식탁·책상 겸용의 탁자를 비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¹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른 기본적인 비품들도 하루빨리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강조하건대 현재 우리의 행형법규에는 수용시설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이다. 이것은 재소자의 인권보호에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시급히 법령에 이를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중에 재소자 한 사람당 최소 공간의 확보와 조명, 환기, 난방, 창문, 그리고 화장실과 같은 기본적인 시설들에 관한 내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또 이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것은 재량 사항이 아니라 강제 사항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감옥의 인권 수준이 그 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수준이라는 말이 있다. 사회 일반의 관심이 가장 최후에 돌려지고 마지막으로 보호되는 곳이 대개 감옥과 재소자의 인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우리의 상태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 차마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지만, 이제라도 재소자 인권보장을 위한 감옥의 개혁 운동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14) 법무부, 「교도소 어떻게 달라졌나」, 1998, 20쪽.

제10장
위생, 의류 및 침구, 식사, 일과

유 해 정

1. 신체 위생

1) 국제기준

(1) 신체 위생 시설을 설치할 의무

국제기준에서는 거주공간 내에 피구금자가 신체 위생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 특히 목욕 및 샤워 설비를 설치할 것을 명시하고 이 시설의 청결과 품위의 유지를 제시하고 있다.

‘최저기준규칙’ 제13조 적당한 목욕 및 샤워설비를 마련하여…….

제14조 피구금자가 상시 사용하는 시설의 모든 부분은 항상 적절히 관리되고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1) 13. Adequate bathing and shower installations shall be provided…….

14. All part of an institution regularly used by prisoners shall be properly maintained and kept scrupulously clean at all times.

(2) 목욕 및 샤워에 대한 규정

국제기준은 목욕 및 샤워에 대한 세부 사항을 피구금자가 구금되어 있는 계절과 지역·기후 등의 세부적 환경조건을 고려한 후 실행하도록 하였으나 최소한 매주 1회 이상의 목욕 및 샤워는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저기준규칙’ 제13조 모든 피구금자가 계절과 지역에 따라 일반 위생상 필요한 만큼 자주 기후에 알맞은 온도로 목욕하거나 샤워 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할 의무가 부과되어야 하되 단 온대기후의 경우 그 횟수는 적어도 매주 1회 이상이어야 한다.”

‘유럽규칙’ 제18조 목욕 및 샤워 설비는 각 피구금자가 기후에 따른 온도로, 계절 및 지리적 지역에 따른 일반위생상 필요한 정도의 빈도수로, 적어도 주 1회는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에 합리적인 횟수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신체 위생을 유지하기 위한 세부 조항

국제기준은 신체 위생을 피구금자의 의무로 부과하고, 피구금자가 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조항을 제시하고 있다.

2) 13. Adequate bathing and showering installations shall be provided so that every prisoner may be enabled and required to have a bath or shower, at a temperature suitable to the climate, as frequently as necessary for general hygiene according to season and geographical region, but at least once a week in a temperate climate.

3) 18. Adequate bathing and showering installations shall be provided so that every prisoner may be enabled and required to have a bath or shower, at a temperature suitable to the climate, as frequently as necessary for general hygiene according to season and geographical region, but at least once a week, wherever possible there should be free access at all reasonable times.

‘최저기준규칙’ 제15조 피구금자에게는 신체를 청결히 유지할 의무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건강 및 청결 유지에 필요한 만큼의 물과 세면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⁴⁾

(4) 이발 및 면도에 대한 규정

국제기준은 피구금자가 용모를 단정히 하여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두발 및 수염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최저기준규칙’ 제16조 피구금자가 그들의 자존심에 부합하는 단정한 용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두발 및 수염을 적당히 조발할 수 있는 기구를 제공하여야 하며 남자는 규칙적으로 면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⁵⁾

2) 국내 행정법규

(1) 목욕 및 샤워에 대한 규정

수용자의 목욕 횟수는 작업의 종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소장이 정한다(행형법 시행령 제95조). 다만, 6월부터 9월까지 5일에 1회 이상, 10월부터 5월까지 7일에 1회 이상 목욕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15. Prisoners shall be required to keep their persons clean, and to this end they shall be provided with water and with such toilet articles as are necessary for health and cleanliness.

5) 16. In order that prisoners may maintain a good appearance compatible with their self-respect, facilities shall be provided for the proper care of the hair and beard, and men shall be enabled to shave regularly.

(2) 화장품의 사용

여자 수용자에 한해서는 신체 위생을 유지하기 위해 화장품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시행령 제94조).

(3) 이발 및 면도

수용자의 두발과 수염은 짧게 깎는다. 다만 여자 수용자와 3월 이하의 형을 받은 자와 잔여형기가 2월 이하인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행형법 제23조).

수형자의 두발은 1월에 1회 이상, 수염은 10일에 1회 이상 짧게 깎아야 한다. 그러나 소장이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두발은 기르게 할 수 있다(시행령 제93조).

3) 설문 분석

(1) 목욕 및 샤워 횟수

목욕 혹은 샤워는 여름의 경우, 1일 1회가 133명(57.8%), 7일 1회 34명(14.8%), 9일 1회 48명(20.9%)이었고, 없었다도 2명(0.9%)이나 되었다. 겨울의 경우에는 7일 1회 169명(73.5%), 9일 1회가 36명(15.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30일에 1회도 3명(1.3%)이나 되었다.

(2) 목욕 및 샤워 시간

목욕 혹은 샤워 시간은 5분이 가장 많았고(59명, 25.7%), 5분 이하도 22명(9.6%)이나 되었으며, 10분 44명(19.1%), 20분 25명(10.9%), 30분 31명(13.5%)이었다.

(3) 목욕 및 샤워시 제공되는 물의 양

목욕 혹은 샤워를 할 때 물의 양이 충분했다가 40명(17.4%), 아쉽

지만 적당하였다가 37명(16.1%), 부족했다가 91명(39.6%), 아주 부족하였다가 59명(25.7%)이었다.

(4) 의류의 세탁

속옷은 수시로 빨 수 있었다 126명(54.8%), 1주일 1회 60명(25.1%), 1주일 2회 30명(13.0%)이었고, 재주껏 세탁하였다. 모아서 한 번에 세탁하였다는 답변도 있었다.

겉옷(수인복)은 수시로 빨았다 30명(13.3%), 가끔 세탁하였다 102명(44.3%)이었지만, 세탁이 불가능한 경우도 79명(34.3%)이나 되었다. 기타 답변으로는 거의 할 수 없었다, 3개월에 1회, 갈아입고 빨 여유가 없었다 등이 있었다.

(5) 세탁 장소 및 도구

세탁은 주로 방 안에서 본인이 하거나(87명, 37.8%), 정해진 세탁시간에 세탁장에서(84명, 36.5%), 또는 공장 수도가에서 했다(32명, 13.9%). 기타 답변으로 사동세면장(12명)과 화장실(5명)을 지적하기도 했다. 세탁기는 대부분 사용할 수 없었다(205명, 89.1%).

(6) 건조

침구(이불, 모포, 침낭)는 언제든지 햇볕에 말릴 수 있었다가 24명(10.4%), 1주일에 1회가 108명(47.0%)이었으나 말릴 수 없었던 경우도 26명(11.3%)에 이르렀다. 기타 답변으로는 1개월에 1회(12명) 또는 어쩌다가(2명), 교도관의 기분에 따라 등이었다.

(7) 이발, 면도

이발은 많은 수가 2주일 한 번(72명, 31.3%) 또는 한달에 한 번(93명, 40.4%)을 했다. 그리고 과반수 이상이 자유롭게 조발했으나

(123명, 53.5%), 76명(33%)은 앞머리의 길이를 제한했다고 답변했다. 그럴 경우 앞머리의 길이는 3cm(28명)나 5cm(20명)가 다수를 차지했다.

면도는 과반수 이상이 언제든지 가능했다고 답변했고(126명, 52.6%), 1주일 1회는 46명(20%), 2주 1회는 16명(7%)이었다.

수염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를 수 있는 경우(50명, 21.7%)보다 는 기를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126명, 54.8%).

(8) 기타 의견

신체 위생과 관련한 기타 의견으로는 목욕할 때 시간과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어려움이 컸다는 대답이 많았다. 특히 목욕이 불가능하여 모멸감을 느낀다는 대답도 있었다. 또한 의류 및 침구의 세탁·건조 등이 원활하지 않아 비위생적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많았으며, 청결하지 못한 의류나 침구를 사용하여 피부병이 생기거나 심한 악취로 고생하였다는 지적도 있었다.

거실에 벌레 등이 생겨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답변도 있었고, 여성의 경우에는 수도시설이 없는 교정시설 내에서 뒷물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어 교정시설 내에서의 여성 재소자의 신체 위생에 대한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종합 평가 및 개선책

(1) 법률상의 문제점

국내 형법규에는 피구금자의 신체 위생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세부적 조항이 체계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의 세부적 조항에 대해서는 소장의 권한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신체 위생의 유지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고 피구금자의 사회화를 촉진할 수 있는 시설과 합리적인 환경의 조성으로부터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국제기준은 신체 위생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주 설비의 설치와 이 시설의 깨끗하며 청결한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내 행형법에는 피구금자가 신체 위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 및 시설의 설치에 대한 법률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본적인 시설 및 설비의 설치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시설 내에는 이발과 면도를 위한 시설도 포함되어야 한다.

행형법 시행령에 “6월부터 9월까지 5일에 1회, 10월부터 5월까지 7일에 1회로” 목욕 및 샤워의 횟수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기준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계절과 지역·기후 등의 환경조건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대기후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행형법에 “여름의 경우에는 최소한 주 2회 이상 샤워 및 목욕이 가능하고 구금시설의 조건과 수용자의 조건에 따라 합리적인 횟수로 자유롭게 샤워 및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

국제기준에는 물과 세면용품, 화장수 등의 지급 원칙이 명시되어 있는 데 반하여 우리나라 행형법에는 여자 수용자에 대한 화장품 사용을 허가하는 조항 이외는 다른 조항은 없다. 따라서 신체 위생을 유지하기 위한 물과 물품 등의 급여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자 수용자에게 한정하고 있는 화장품의 사용을 전체 재소자에게로 확장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남자 재소자의 경우 삭발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95년부터 짧게 깎도록 하였다. 그러나 교화·작업상 지장이 없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두발의 형태를 강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수염의 길이도 개개인의 취향에 맡겨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 행형법에 규정하고 있는 두발 형태와 수염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10일

1회로 규정되어 있는 면도의 횟수를 원하는 사람에 한하여 최소한 주 1~2회 이상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도 삽입해야 할 것이다.

구금시설 내에서의 대다수의 재소자들은 세탁기를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모든 재소자가 세탁기를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지라도 장기수, 고령자, 임산부 등에게는 세탁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겨울철 겉옷에 한해서라도 세탁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필요하며, 최소한 탈수기라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2) 운영상의 문제점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수용자들은 규정된 목욕 및 샤워 횟수도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행령 95조에는 “6월부터 9월까지 5일에 1회 이상, 10월부터 5월까지 7일에 1회 이상의 목욕”을 보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35% 이상이 여름의 경우 7일 이상에 1회 목욕이 가능하였다고 대답하였고, 겨울의 경우에도 9일 이상에 1회 가능하였다고 대답한 수가 17.4%에 이르렀다. 따라서 적당한 신체 위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확충과 목욕 및 샤워 횟수의 합리적 증가와 운영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또한 대부분의 수용자들이 목욕 및 샤워를 하기에 시간과 물이 부족하다고 했고, 신체 위생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어 모멸감을 느낀다는 지적도 있었다.

재소자들은 감방이나 세탁장에서 주로 세탁을 했으며, 속옷의 세탁은 원활한 반면 겉옷의 세탁은 자주 하지 못했다. 이는 재소자 1인당 겉옷이 1벌만 지급되어 여벌의 옷이 없는 데서 기인하기도 한다. 따라서 세탁시 여벌의 겉옷을 지급하여 적정한 기간마다 세탁하여 의류의 청결성과 재소자의 자존심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침구의 건조는 1주일에 1회 이상 가능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절